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3. 12. 13. (수요일), 14:0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 대회의실

목 차

【심의사항】

1	과주 장릉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2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	
3	경주 감은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4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	
5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6	서산 해미읍성 내 호서좌영루 해체보수	
7	남원 만복사지 내외 경사면 정비 및 도로 확장	
8	고령 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9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건물 증축 및 외부환경 개선 등	
10	제2로 직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11	수원 화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2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3	경주 옥산서원 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14	경주 나정 주변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신축	
15	여주 파사성 내 경관개선 등	
16	김포 덕포진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17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	
18	강화 고려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19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 기숙사동 신축 및 교사동 증축 등	
20	김포 덕포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1	김포 문수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2	이천 설봉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3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 3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4	대구 불로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5	달성 도동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6	대구 구암동 고분군 등 2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27	인천 계양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8	강화 삼랑성 등 7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29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및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등 9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30	강화 참성단 및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31	강화 부근리 지식묘 및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32	강화 홍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33	강화 외성 등 6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통합안)
34	강화 선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35	강화 석릉 및 강화 곤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36	강화 가릉 및 강화 능내리 석실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37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38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39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40	서울 초안산 분묘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41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42	서울 선잠단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검토사항】

1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2	고성 송학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검토
3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등) 검토
4	익산 미륵사지 내외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 검토
5	익산 미륵사지 내 경관조명 추가설치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보고사항】

- | | | |
|---|------------------------------|--|
| 1 | 2024년 사적분과 문화재현장 위원회 운영 등 보고 | |
| 2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3-12-001

1. 파주 장릉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파주 장릉」의 문화재지정구역 일부 해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장릉 104개 필지(414,427㎡) 중 2008년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시 오기입된 1필지(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7, 231㎡)에 대하여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23년 9차 위원회('23.09.13.) 원안가결
- 예고결과
 - 예 고 일 : 2022. 10. 19.(문화재청 공고 제2023-378호)
 - 예고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예고의견 : 별도 제출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장릉(사적 / 1970.05.26.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장릉로 90(탄현면)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조정(해제) 조서

구분	기존 지정면적		금회 해제면적		조정 후 면적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04	414,427㎡	1	231㎡	103	414,196㎡	
문화재구역	104	414,427㎡	1	231㎡	103	414,196㎡	

(4) 일부 해제 사유

- 조정 필지는 2008년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당시 포함된 필지이나 추가지정 사유로 논의된 연지 및 우백호 복원 예정지와 동떨어진 곳에 해당 필지

(1필지)만 위치하고 있어 해당 필지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명확치 않아 해당 필지는 오기입된 것으로 판단됨

2.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4차 소위원회('23.04.26.)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나정(사적 / 1975.11.20.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탑동 700-1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505(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3년 소위4차-부결	금회	비고
대지면적	589.00m ²	좌동	
건축면적/연면적	49.90m ² ×2동	49.90m ² ×1동	
구조	목구조/한식기와잇기	좌동	
최고높이	지상 1층 / 5.51m	지상1층 / 6.01m	
토목	가동터파기(85.30) / 되메우기(36) 수로관 59m,성토 0.5m	좌동	

3. 경주 감은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감은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감은사지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2년 7차 위원회('22.07.13.)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2년 9차 위원회('22.09.21.)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3년 6차 위원회('23.06.14.)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감은사지(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당리 55-1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구길리 산1-1번지, 산1-6번지(문화재구역 으로부터 26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2년 9차		'23년 6차	금회
	가·나·다동	라동	라동	
건축면적	각 42.3㎡ (126.9㎡)	51.3㎡	42.3㎡	42.3㎡ (건물위치 1m 이동)
구조(지붕)	경량철골조(징크판넬)			
높이	4.72m	4.9m	4.72m	좌동
석축	(H=0.9~1.5) L=42m, (H=0.9~2.9) L=137m, (H=2.9) L=86m		(H=0.9~1.5) L=40m, (H=0.9~2.5) L=28m, (H=0.9~2.9) L=79m	좌동
잔디식재	124㎡		-	-
수목식재	대나무 L=205m		대나무 L=105m	대나무 L=102m
콘크리트 도로포장	T=0.2m, 77㎡		T=0.2m, 78㎡	좌동

4.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7차 위원회('23.07.12.)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 2009.08.24. 지정)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931번지 일대
- (3) 신청내용<경관조명 설치>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58번지 일원(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23년 7차-부결	금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웬스형 목책조명 설치(39개소) 간격 약 6m - 크기 및 제원 : 0.1×0.4m / LED 10W(3000K) - 조명선로 매설(L=289m, 0.6×0.4×0.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명 철거(산책로 내측 비컨등 21개소 철거) / 0.15×0.3m - 신규 조명 설치(LED 블라드 조명 21개소) / 0.15×0.9m * 크기 및 제원 : 0.15×0.9m / LED 15W(3000K) - 조명선로 매설(L=125m, 0.6×0.4×0.6m) - 신규 분전함 설치 1개소(0.4×0.5×0.2m) - 수목조명 3개소(개소당 2개) * 크기 및 제원 0.2×0.2×0.1m / LED 12W(3000K) - 진흙청 주변 LED 지중조명 설치 1개소(8개) * 크기 및 제원: 0.28×0.28×0.25m / LED 20W(3,000K/방수형)

5.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 공사를 변경 시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1차 위원회('17.01.11.) 조건부가결
 - '22년 3차 소위원회('22.05.25.)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사업추진 허가기간(2017.1.16.~2021.12.12.) 만료 및 노선구간 일부 변경에 따라 현상변경 재신청
 - '22년 4차 소위원회('22.06.22.) 원안가결
 - '23년 3차 소위원회('23.05.24.) 원안가결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 2009.08.24. 지정)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931
- (3) 신청내용<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312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0m 이격 /6구역(개별법), 1구역(개별검토)}
 - 사업내용

구분	'22년 4차 소위	'23년 3차 소위 (변경 1차)	변경 2차
내용	1)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 소성리 2) 허가내용 : 오천 우회도로 개설 ▷ 사업구간 : 연장 3.98km (기존도로 덧씌우기)	1)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 소성리 2) 허가내용 : 오천 우회도로 개설 ▷ 사업구간 : 연장 3.98km (기존도로 덧씌우기)	1)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 소성리 2) 허가내용 : 오천 우회도로 개설 ▷ 사업구간 : 연장 3.98km (기존도로 덧씌우기 1.92km,

구분	'22년 4차 소위	'23년 3차 소위 (변경 1차)	변경 2차
	1.92km, 신설 2.06km) ▷ 노선계획 : 폭 9.5m, 2차로, 횡단육교 1개소 (13m)	1.92km, 신설 2.06km) ▷ 노선계획 : 폭 9.5m, 2차로, 횡단육교 1개소 (13m) ▷ 공법변경 - 구간: Sta.2-304~515 - 변경내용 · (기존) 보강토 옹벽(1,925㎡, H=14.25m) · (변경) 흙쌓기 8,640㎡	신설 2.06km) ▷ 노선계획 : 폭 9.5m, 2차로, 횡단육교 1개소(13m) ▷ 공법변경 - 구간: Sta.2-304~515 - 변경내용 · (기존) 보강토 옹벽(1,925㎡, H=14.25m) · (변경) 흙쌓기 8,640㎡ ▷ 부체도로 신설 - 구간: Sta.2+940~3+040 - 변경내용 · (기존) 기존 지방도 접속도로 · (변경) 접속도로 외부 부체도로 추가(A=1,080㎡, L=121.6m, W=3m)
이격 거리	240m	232m	232m 단, 금회 공사구간 이격거리 변경 - (기존) 358m - (변경) 343m
구역	6구역(89,871㎡)	1구역(812㎡), 6구역(89,871㎡)	1구역(812㎡), 6구역(90,951㎡) 증1,080㎡

6. 서산 해미읍성 내 호서좌영루 해체보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사적 「서산 해미읍성」 내 호서좌영루 해체보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산 해미읍성 내 호서좌영루 해체보수를 진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1년 실시한 정부합동 안전점검 개선요구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산 해미읍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6번지
- (3) 신청내용<호서좌영루 해체보수>
 - 위치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2-2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동헌문루 도리이상 해체 후 부식재 교체/ 기둥교체 4개소(교체부재 고색 단청)
 - 번와보수 : 기와교체율 60%
 - * 전면기둥 3개소 및 우측기둥 1개소 부식, 지붕기와 노후에 따름

7. 남원 만복사지 내외 경사면 정비 및 도로 확장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사적 「남원 만복사지」 내외 경사면 정비 및 도로 확장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원 만복사지 내외 경사면을 정비하고 도로를 확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남원 만복사지(사적 / 1991.03.30. 지정)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9번지 일원

(3) 신청내용<경사면 정비 및 도로 확장>

○ 위치 :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9번지 등(문화재구역, 2구역)

○ 사업내용

1) (북쪽 경사면 정비) 거친돌 1단 석축 설치, 연장 46.7m, 높이 1.4m, 잔디식재 91.1m²

※ 문화재지정구역과 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에 걸쳐있으며, 일부가 문화재지정구역에 해당됨.

2) (동쪽 도로 확장) 연장 122m, 폭 1~3m, 판축다짐 280.98m², 잔디 식재 410.18m²

※ 현재 도로 너비 : 4~6m

8. 고령 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고령 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령 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주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중화리 산3번지 외 29필지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7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3m 이격 /1구역(개별검토)}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519㎡
- 건축(연)면적 : 99.5㎡
- 건축규모/ 최고높이 : 지상1층 1동/ 4.55m(경사지붕)
- 건축구조 : 일반목구조

9.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건물 증축 및 외부환경 개선 등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사적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건물 증축 및 외부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건물 증축 및 외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산1-29번지 외
- (3) 신청내용<건물 증축 및 외부환경 개선 등>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사항)
 - 소월로변 진입로 화단 교목과 관목 추가 식재, 산책로 및 휴식공간 조성, 진입로 확장
 - 소월로변(건물 2~3층) 옥외주차장과 필로티 공간을 유리입면 마감하여 업무시설로 증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사항)
 - 주차램프 상부(옥상부) 휴게공간, 화계 조성, 단차를 이용한 보행데크 설치
 - 층별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층수(최고높이)	84.7m	동일	지하4층/지상20층
총 연면적	57,574.54m ²	58,649.06m ²	증 1,074.52m ² (증축 면적+재산정 바닥면적)

지하1층	4,607.28m ²	4,607.28m ²	주차장→업무시설 변경(40.26m ²) 공개공지→업무공간 사용(271.83m ²)
1층	4,103.24m ²	4,439.92m ²	주차장→업무시설 변경(38.59m ²)
2층	3,135.45m ²	3,882.28m ²	주차장→업무시설 변경(734.22m ²)
3층	3,054.42m ²	3,204.97m ²	주차장→업무시설 변경(773.29m ²)
5층	1,824.57m ²	2,062.50m ²	업무시설 면적증가(237.93m ²)

10. 제2로 직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경기도 성남시 등 12개 시·군 소재 사적 「제2로 직봉」(14개 봉수 유적)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2로 직봉(14개 봉수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 접수 의견

문화재명	제출자	주요 의견	비고
단양 소이산 봉수	단양군	·봉수 유적 아래 마을은 급경사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절·성토, 법면, 석축, 옹벽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공통사항 높이 3m 기준 완화 또는 제외 요청 ·개별심의 지역 축소(100m → 50m)	
	서○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	
	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취소, 100m 이내 범위로 설정 ·마을 발전을 위해 지원 요구	
	윤○호	·500m 거리 말고 보호구역 내로 한정 ·마을 발전 기금 지원	
	황○숙 외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00m만 보존, 아니면 보상을 하고 지정해야	
	오○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0m 이내로	
	권○국	·봉산마을에는 문화재 자체를 무조건 반대	
	유○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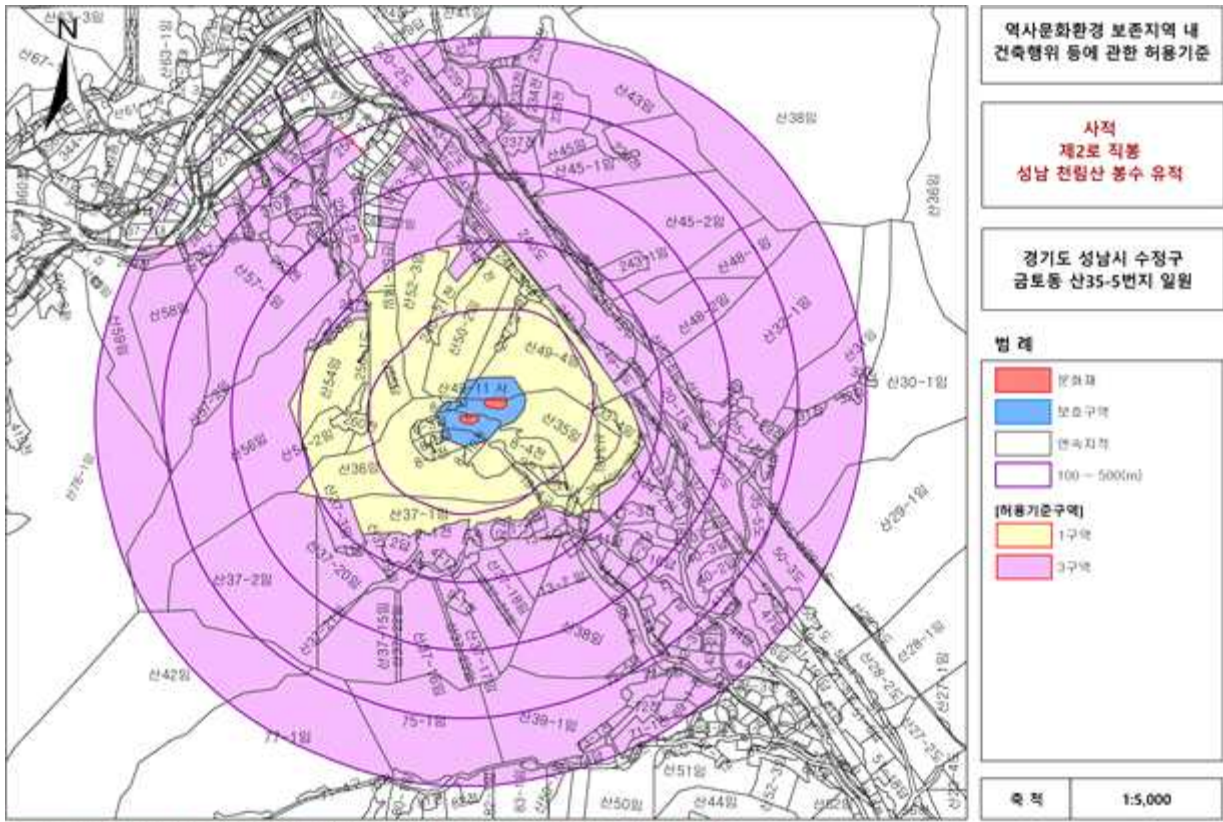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2로 직봉(사적 / 2023.01.10.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번지 일원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

① 성남 천립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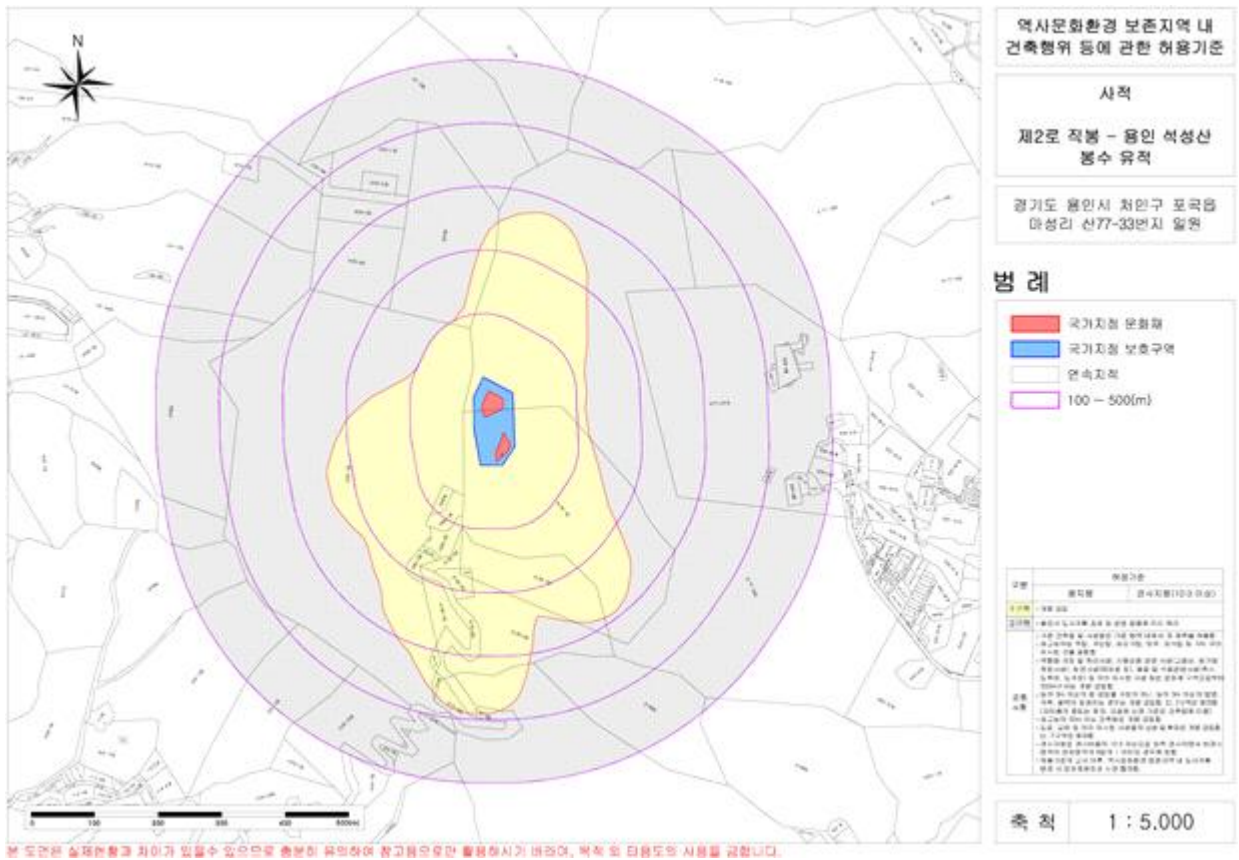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측현황과 지리적 실물측량 및 영상정보를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일부 미흡한 점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3차원도면의 사용에 유의합니다.

② 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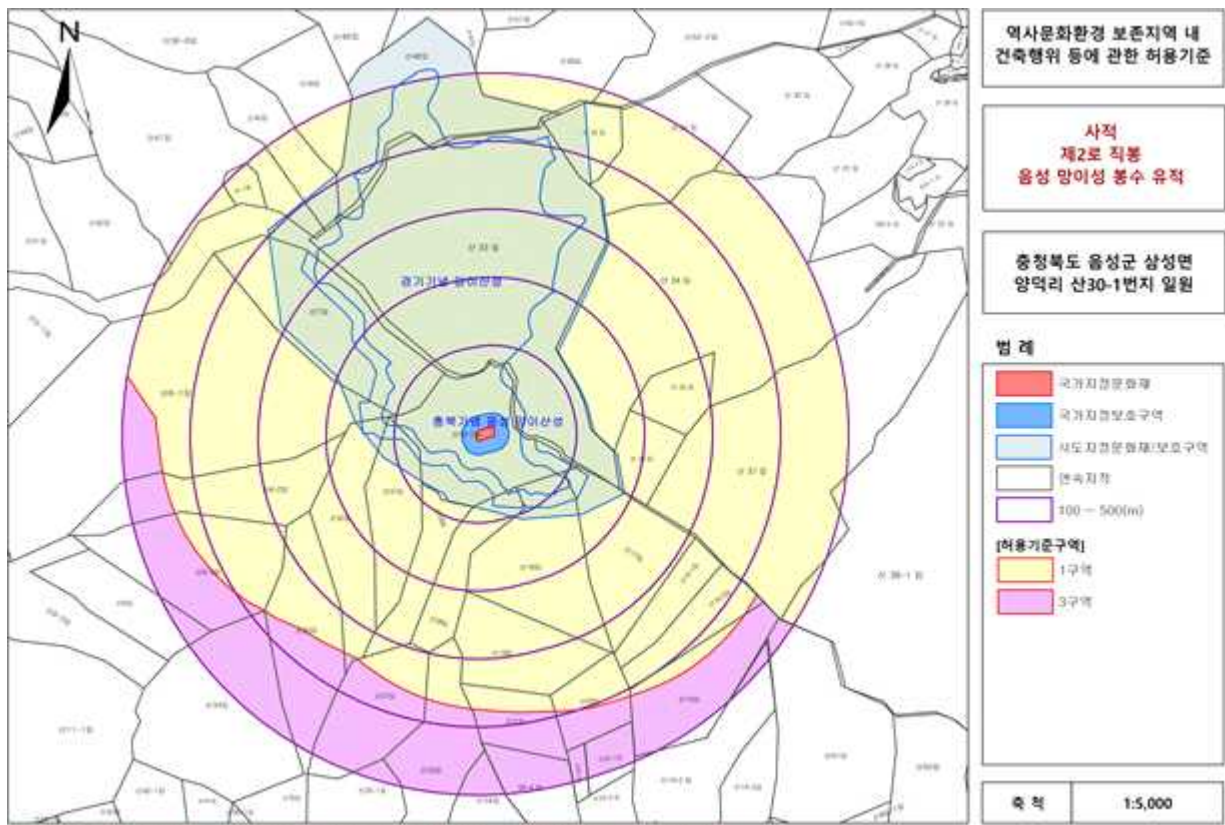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



④ 음성 망이성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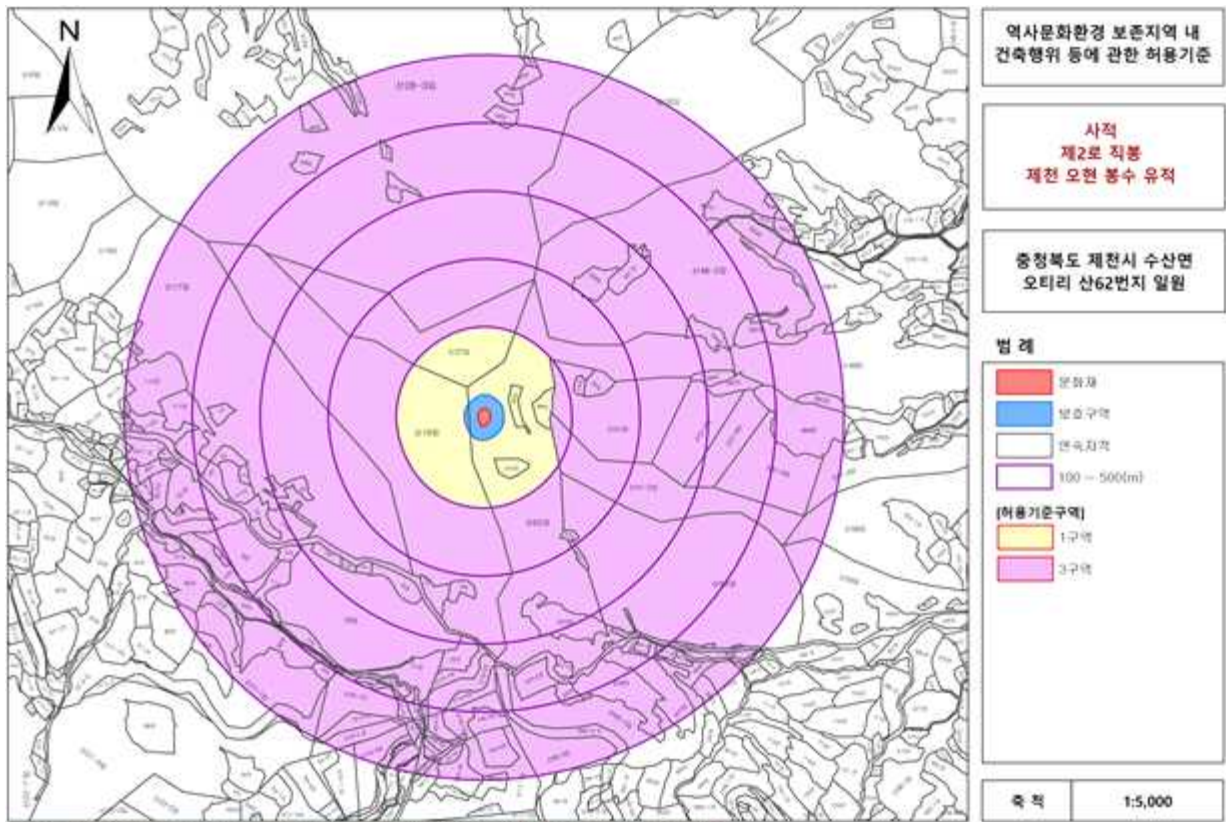


본 도면은 충청문화유산 자료가 실용·보존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용도상 차이는 물론이고,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제천 오현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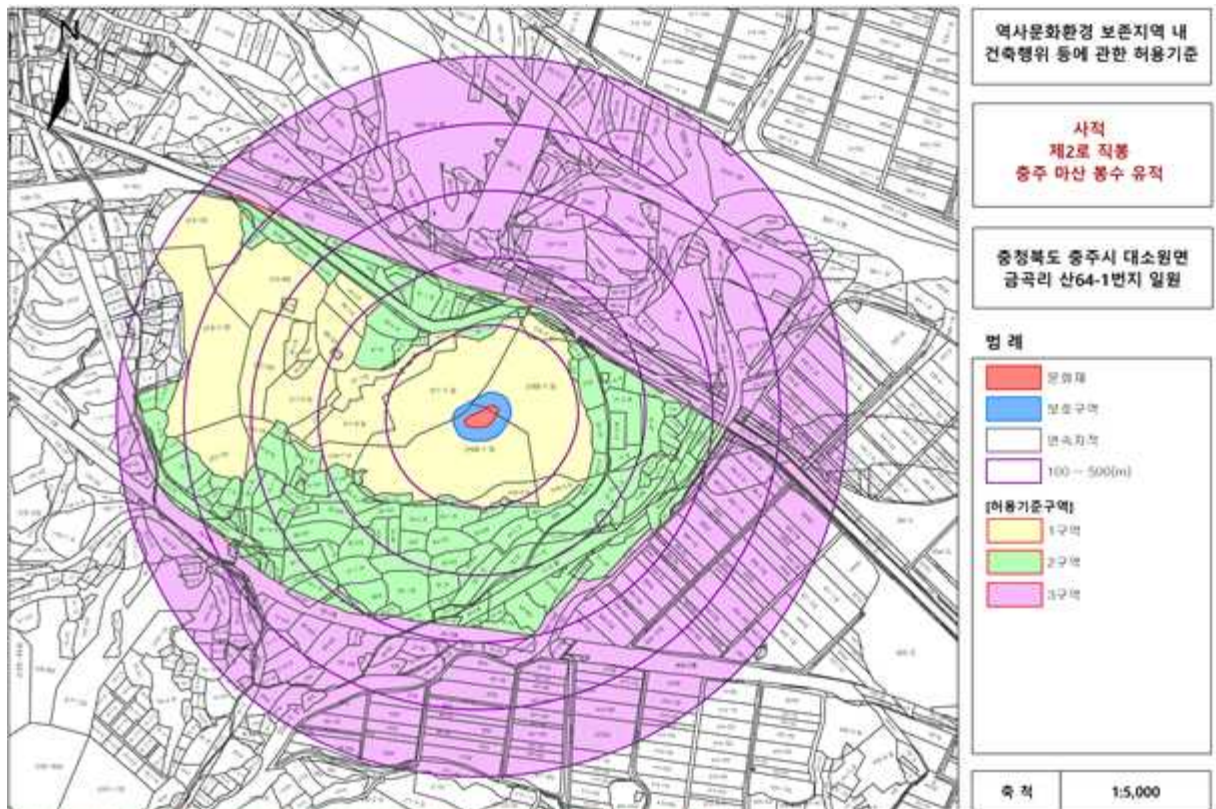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



⑥ 충주 마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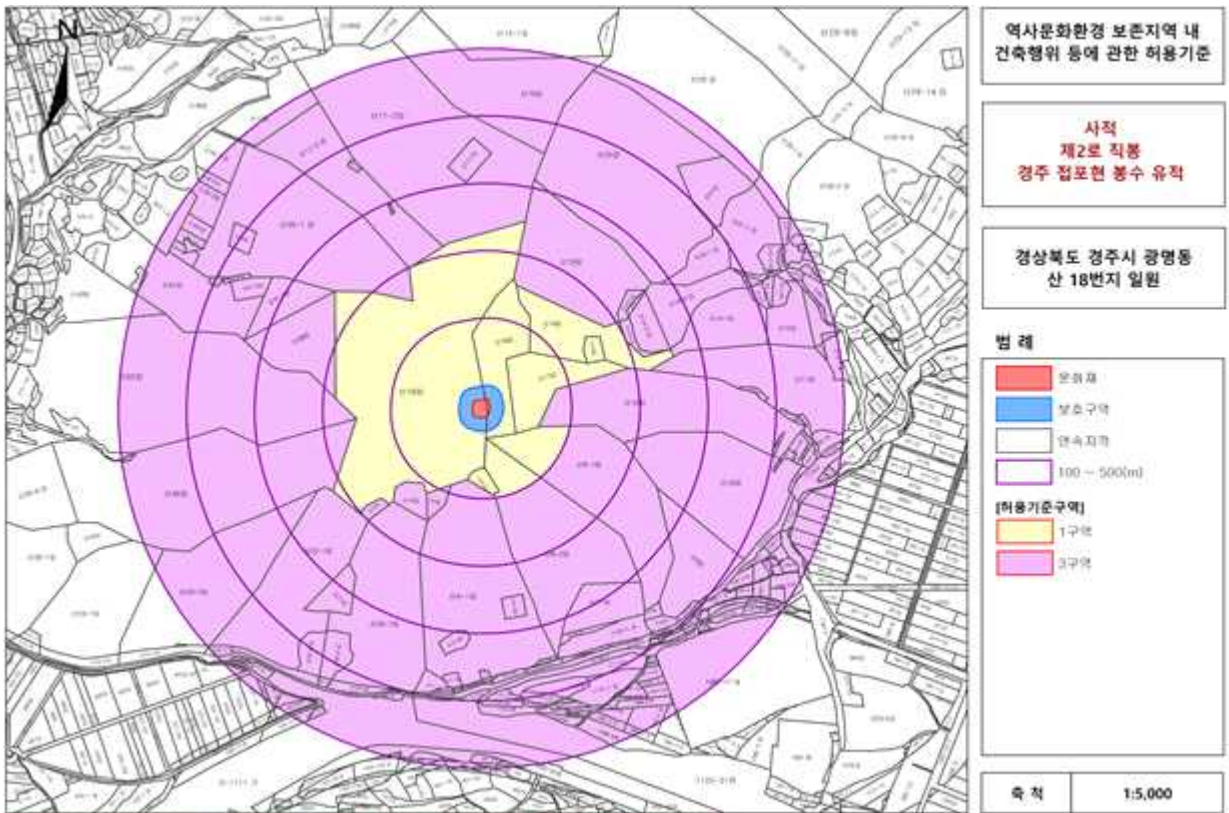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체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용역주(유역관리)의 검토를 통한 수정사항이 반영된 후의 최종도면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⑦ 경주 접포현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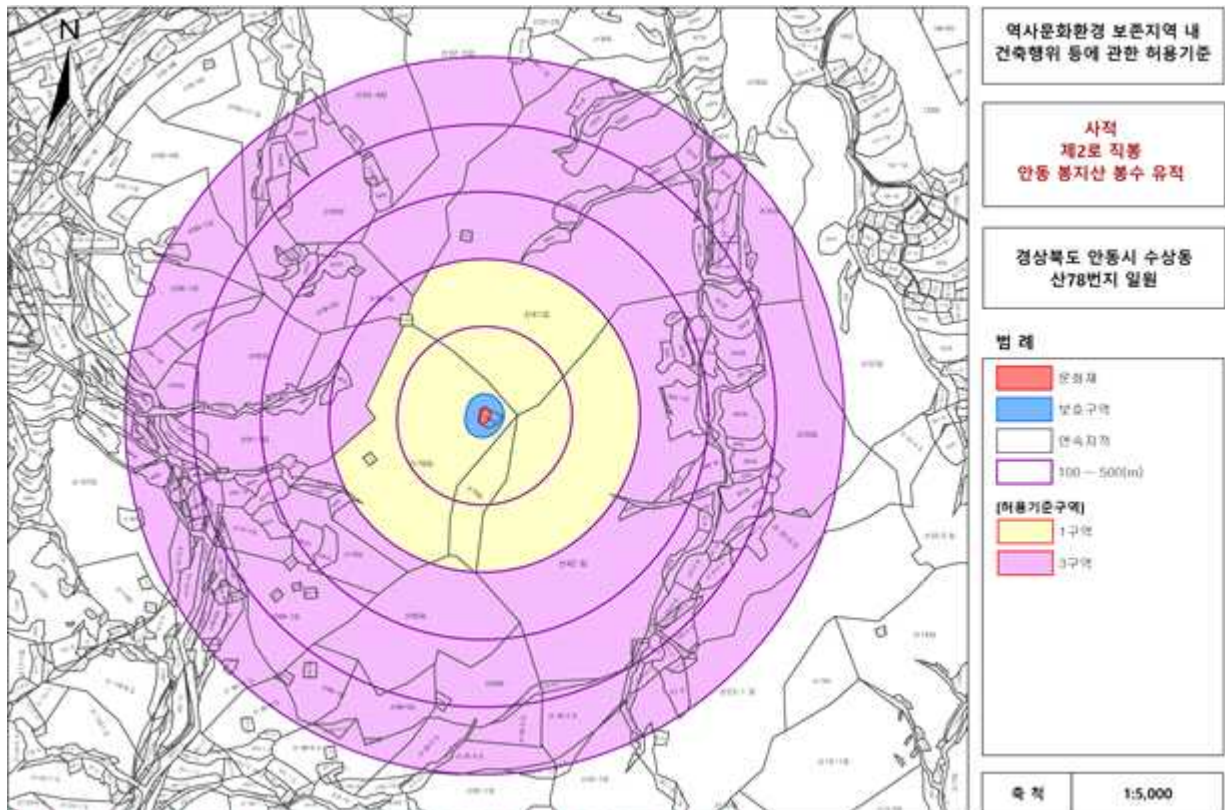


본 도면의 실형은 실제 지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도면은 축척 1:5,000로 작성된 것입니다. 축척 1:5,000의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⑧ 안동 봉지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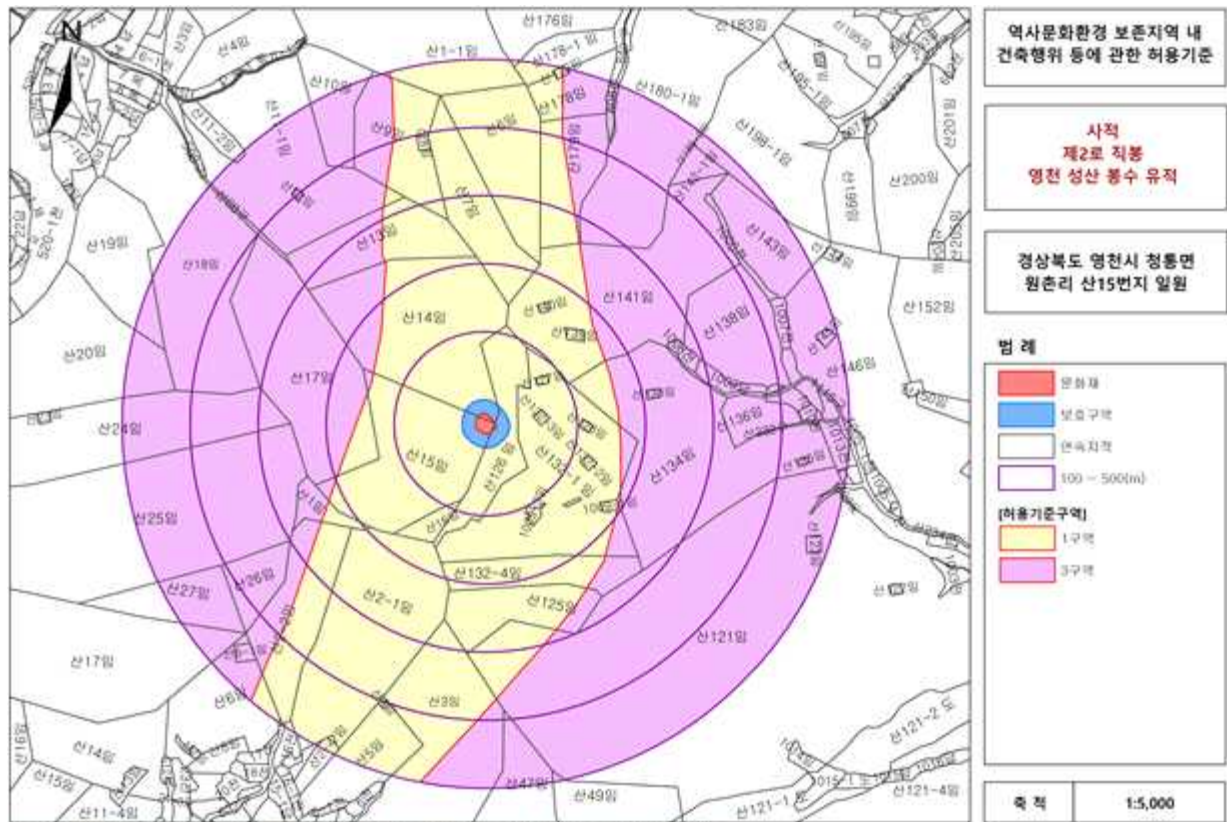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



⑨ 영천 성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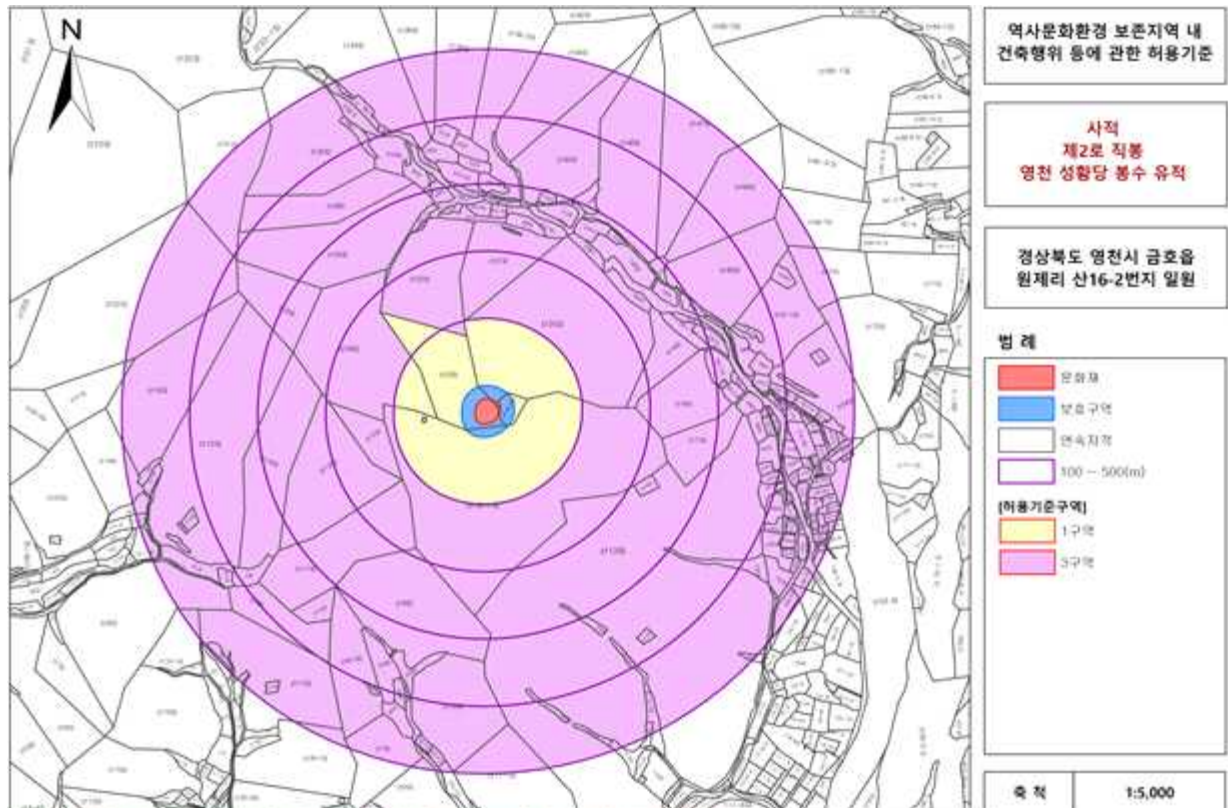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



⑩ 영천 성황당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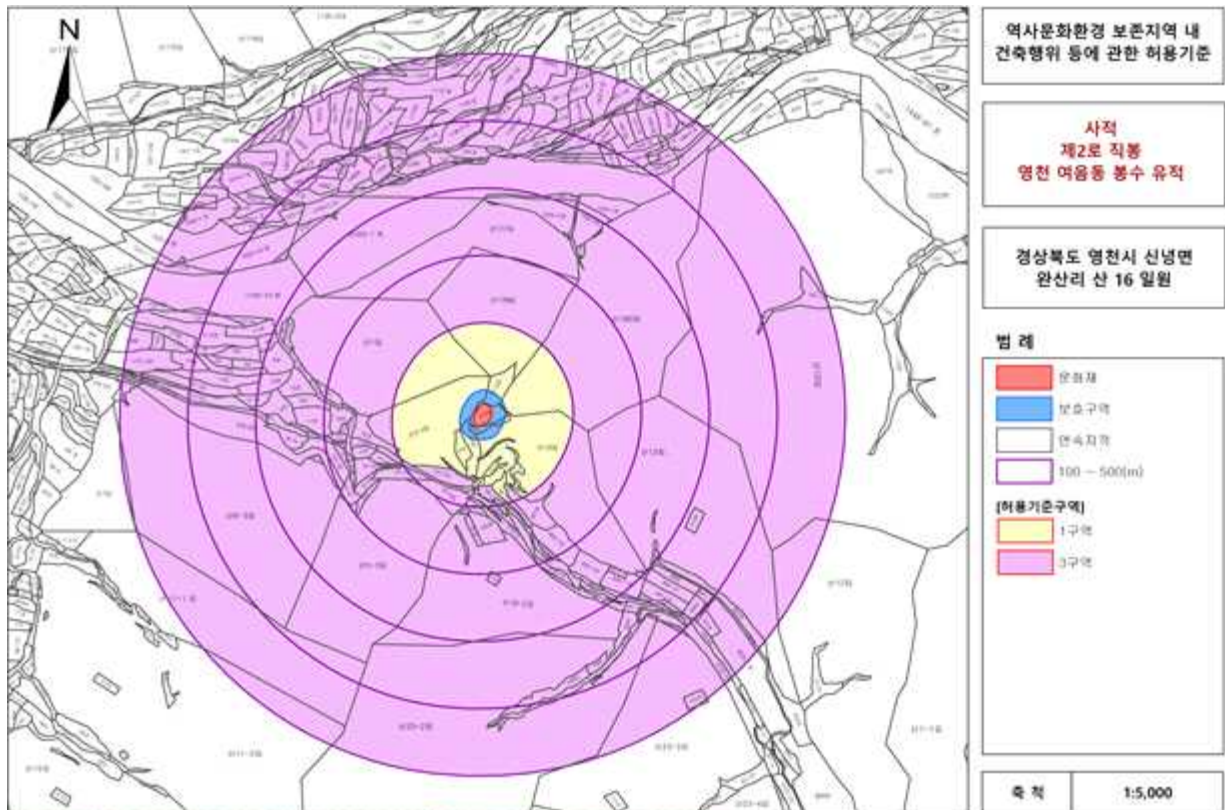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



⑪ 영천 여음동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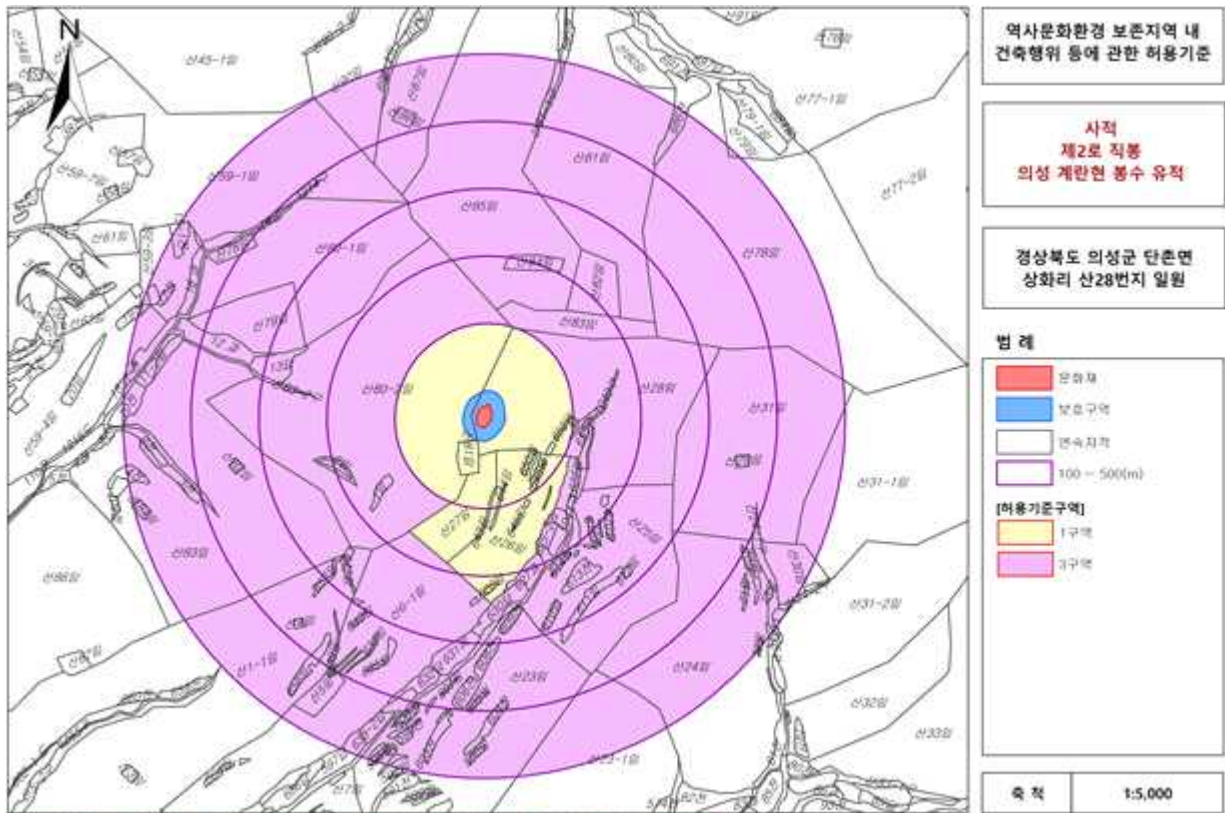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



⑫ 의성 계란현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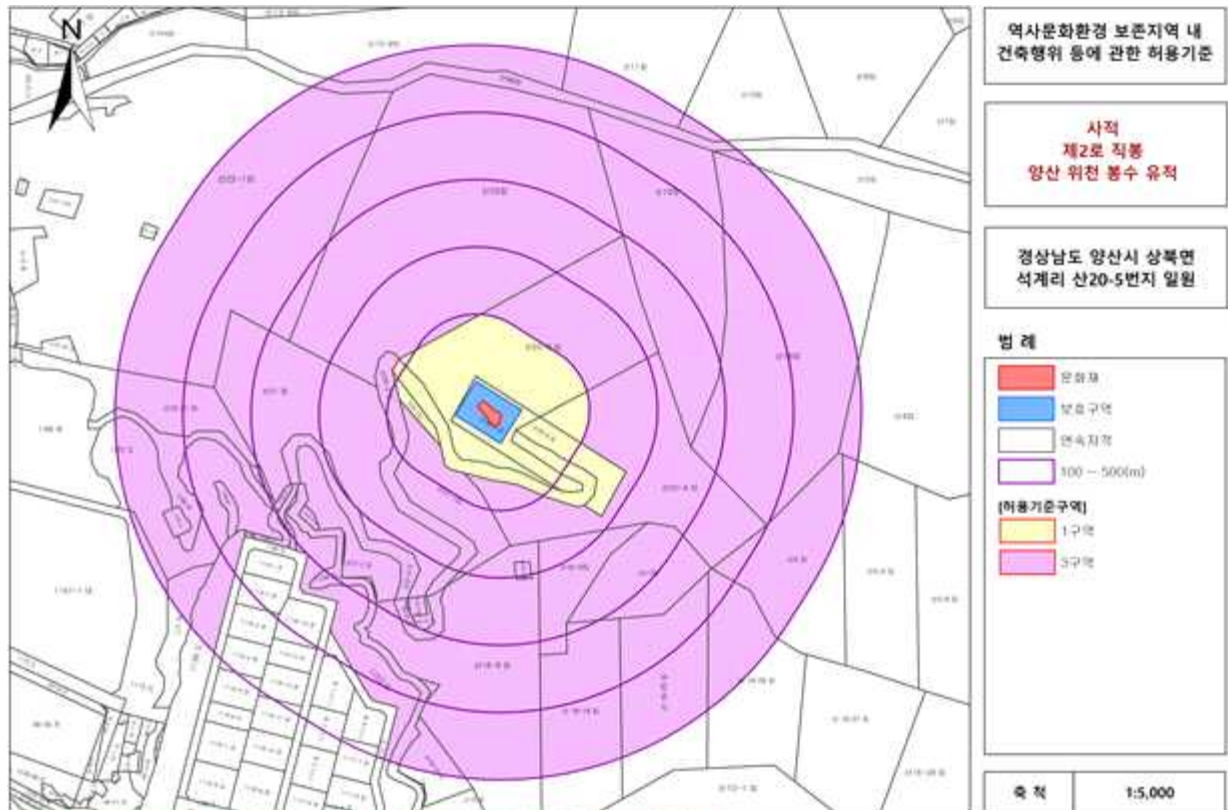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용역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축척 및 차등도의 사불을 금합니다.

⑬ 양산 위천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도면



11. 수원 화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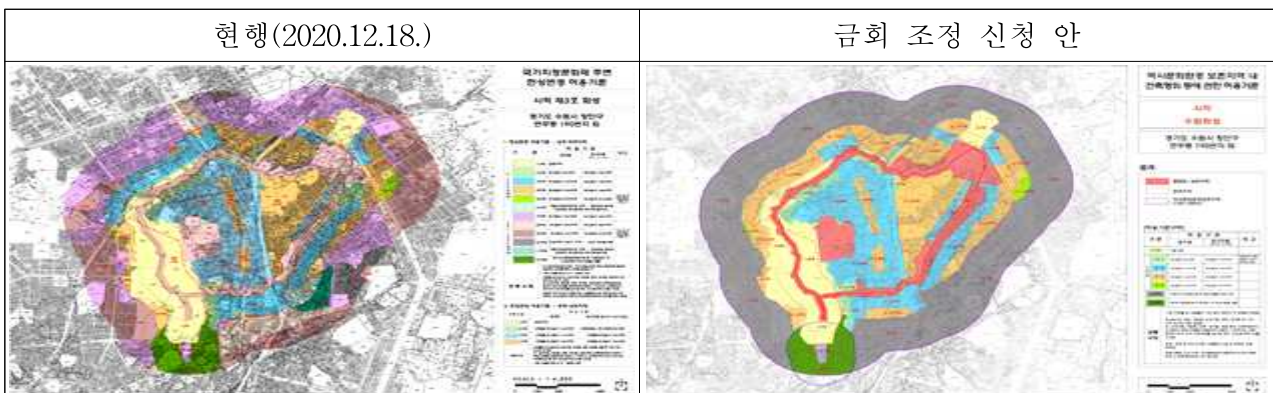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수원 화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수원 화성의 보호구역 확대('21.01.20.) 등에 따라 변경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1963.01.21. 지정),
수원 화성행궁(사적/2007.06.08. 지정),
수원 화서문(보물/1964.09.03. 지정),
수원 팔달문(보물/1964.09.03. 지정),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보물/2019.08.29. 지정),
수원 방화수류정(보물/2011.03.03.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 성곽 내부지역			- 성 내·외 공통			
구분	현행(2020.12.18. 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신청 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2-1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성곽내부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2-3 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2-4 구역	○ 최고높이 47m 이하	○ 최고높이 5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 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수원향교”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 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성곽 외부지역						
0-200m 이내	1 구역	○ 보존구역		공통 사항		
	2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4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51m 이하			
	6 구역	○ 개별현상변경신청구역-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201 m - 500 m 이내	7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8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33m 이하	
	9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4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51m 이하	
	10 구역	○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기승인 층수를 따름		
	11 구역	○ 개별현상변경신청구역-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 구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겹축면적의 60% 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 			

12.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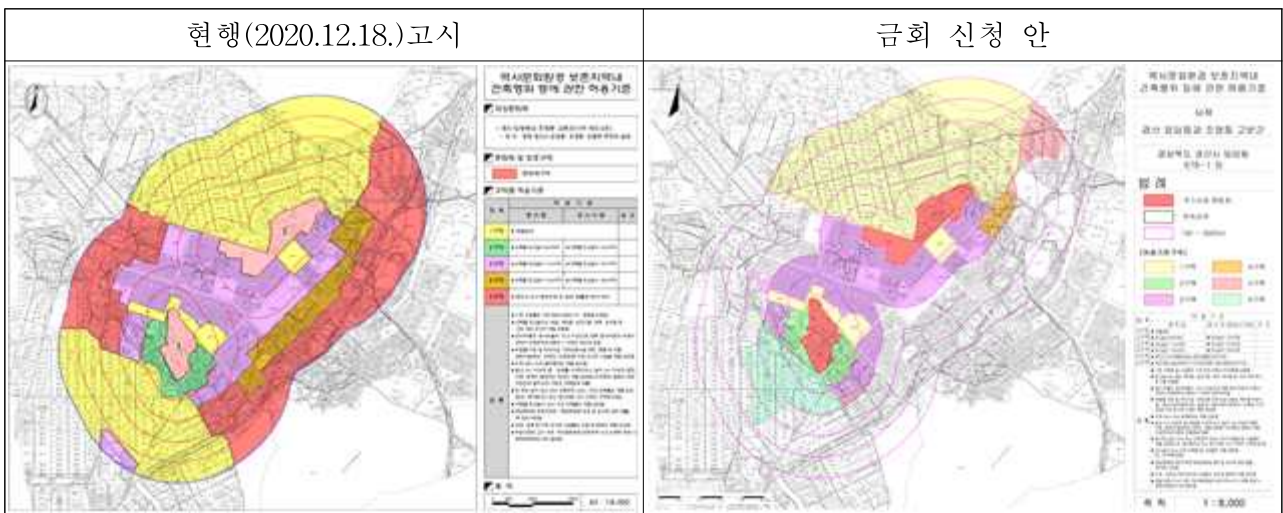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사적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국가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11차 위원회('23.11.08.) 보류 :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확인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사적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676-1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9.04.03. 기고시)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신설>		○ <u>경산대입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처리</u>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연순환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상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u>건축물</u> 및 시설물은 <u>기존</u>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연순환관련 시설(<u>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u>), <u>발전 시설(태양광 등)</u>,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u>검토</u>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u>검토</u>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u>검토</u>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u>검토</u>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상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u>검토함(단, 5구역에 한함)</u>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u>검토</u>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13. 경주 옥산서원 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옥산서원」 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옥산서원 내 가설건축물(농막)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옥산서원(사적 154호 / 1967.03.08.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 (3) 신청내용<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15(문화재구역)
 - 설치면적 : 18㎡(3m×6m)
 - 건물높이 : 3.2m
 - 부대시설 : 펜스설치(H=1.2m, L=139.0m), 지하수 인입, 전기가설
- (4) 신청인 의견
 - 농사를 위한 창고 설치하고자 함

14. 경주 나정 주변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나정」 주변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나정 주변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1년 4차 소위원회('21.04.30.)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나정(사적 / 1975.11.20.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탑동 700-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422-8(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8m 이격/1구역)

구분	'21년 소위4차-부결	금 회	비고
대지면적	792.00㎡	좌동	
건축면적/연면적	155.80㎡ / 136.80㎡	155.20㎡ / 133.92㎡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맞배지붕 /한식골기와잇기	철근콘크리트구조/팔작지붕 /한식골기와잇기	
최고높이	지상1층, 7.15m	지상1층, 7.171m	
토목	Con'c 포장 : T=20cm, 수량=654.0㎡ 우수받이 : 510×410×940, 수량=6개소 PE관 : D300mm, 수량=62m	좌동	

(4) 신청인 의견

- 신청지는 경주 나정 주변 북편에 위치한 농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건립하여 관광객의 편의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5. 여주 파사성 내 경관개선 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여주 파사성」 내 경관개선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파사성 내 탐방로 주변 나대지에 관목 및 초화류 등 식재를 통한 경관개선 및 토사유실 방지와 파사산 정상에 정상석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파사성(사적 / 1977.07.21.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번지
- (3) 신청내용<경관개선 등>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파사성 탐방로 주변 나대지 및 파사산 정상
 - 사업면적 : 1,552m²
 - 식재수종(수량) : 개나리(800주), 산철쭉(8,053주), 백철쭉(1,433주), 회양목(330주), 조팝나무(366주), 구절초(3,580본)
 - 시설물 : 정상석(화강석, 400×1,200×150mm)
- (4) 신청인 의견
 - 여주 파사성을 찾는 관람객의 사계절 볼거리 제공 및 경사지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 성곽 탐방로 주변에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관람객들의 포토존 마련을 위해 정상석을 설치하고자 함

16. 김포 덕포진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김포 덕포진」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설치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포 덕포진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덕포진(사적 / 1987.09.2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5번지 일원

(3) 신청내용<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08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 검토)}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900m²
- 건축면적/ 연면적 : 18m²/ 18m²
- 구조 :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 규모/ 높이 : 지상1층/ 2.95m

(4) 신청인 의견

- 농사를 위한 기계 및 도구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농막 필요. 사적지에서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예정

17.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1동) 및 다세대주택(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마하리 고분군(사적 / 2003.08.29.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40번지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241 등 5필지(문화재구역과 연접/2구역)
 - 사업내용

구분	단독주택(1동/1세대)	다세대주택(2동/12세대)
대지면적	402㎡	1,988㎡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축면적/연면적	86.89㎡ / 165.64㎡	165.10㎡ / 990.60㎡
층수 및 최고높이	2층(지하1층) / 8.6m	3층 / 10.9m
L형 용벽	H=1.5~3m, L=33.2m	H=1.5m, L=18m
특이사항	엘레베이터 설치	

(4) 신청인 의견

- 봉담읍 마하리 주민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 2~3층 건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높이가 증가함

18. 강화 고려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고려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고려궁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3년 1차 위원회('23.01.11.)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3년 8차 위원회('23.08.09.)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고려궁지(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관청리)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52-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5m 이격/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
 - 사업내용

구분	증축 전	증축 후			비고
		'23년 1차-부결	'23년 8차-부결	금회	
신청면적	110㎡	좌동	좌동	좌동	
건축면적	39.10㎡	57.42㎡	60.51㎡	좌동	
연면적	39.10㎡	107.54㎡	122.95㎡	좌동	
건축규모	지상 1층 (1동)	지상 2층(1동)	지상 2층 1동 (지하 1층 포함)	좌동	
최고높이	3.954m (평지붕)	8.457m(평지붕) -난간 1.3m 포함 -계단(1.4m) 포함	6.85m(평지붕) -난간 제외 -계단(1.4m) 미포함	6.5m(평지붕) -난간 제외 -계단(1.4m) 미포함	
건축구조	연와조	연와조, 일반철골조	연와조, 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19.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 기숙사동 신축 및 교사동 증축 등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 기숙사동 신축 및 교사동 증축 등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 기숙사동 신축 및 교사동 증축 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사업내용<강화여고 기숙사동 신축 및 교사동 증축 등>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36번지 등 19필지(문화재구역과 연결 /1, 3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0,416㎡
 - 건축면적/ 연면적 : 기존(2,919.76㎡/ 8,612.96㎡)→신축 및 증축후{5,134.9㎡ (증 2,215.14㎡=기숙사동 2,070.24㎡+교사동 144.9㎡)/ 16,617.91㎡(증 8,004.95㎡=기숙사동 7,570.25㎡+교사동 434.7㎡)}
 - 건축규모
 - 기숙사동 : (기존-철거)지하 1층, 지상 3층→(신축)지하 1층, 지상 4층/ 최고높이 (기존-철거)13.6m→(신축)19.8m
 - 교사동(수평증축) : 지상 4층/ 최고높이 16.05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 부대시설 : 주차장(2,027.53㎡), 휴게공간(654.98㎡), 소운동장(723.41㎡)

- 토목공사

- 토 공 : 절토(H=6.3m) 3,629.1m³, 성토(H=4.75m) 2,533m³
- 구조물공 : L형 옹벽(H=1.2~6m, L=422.5m), 역L형 옹벽(H=1.2~6m, L=65.8m)
- 우 수 공 : 원형맨홀(D900) 6개, 집수정(700×700) 4개,
측구수로관(300×300) L=312.1m, U형플림관(B300) L=81m,
우수관(D300) L=176.6m, 우수연결관(D200) L=20m
- 오 수 공 : 원형맨홀(D900) 4개, 우수관(D200) L=77.7m
- 포 장 공 : 아스콘 포장(T=45cm) A=2,163.1m², 인조화강블록포장(T=30cm)
A=1,536.8m², 마사토 포설 및 다짐(T=20cm) A=692.3m²

(4) 신청인 의견

- 현재 강화여고 학생들은 노후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기숙사와 교사동과의 거리가 멀어 치안과 범죄에 취약하고 대다수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함.
- 이에, 기숙사를 별도 증축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원거리 학생들에게 학업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20. 김포 덕포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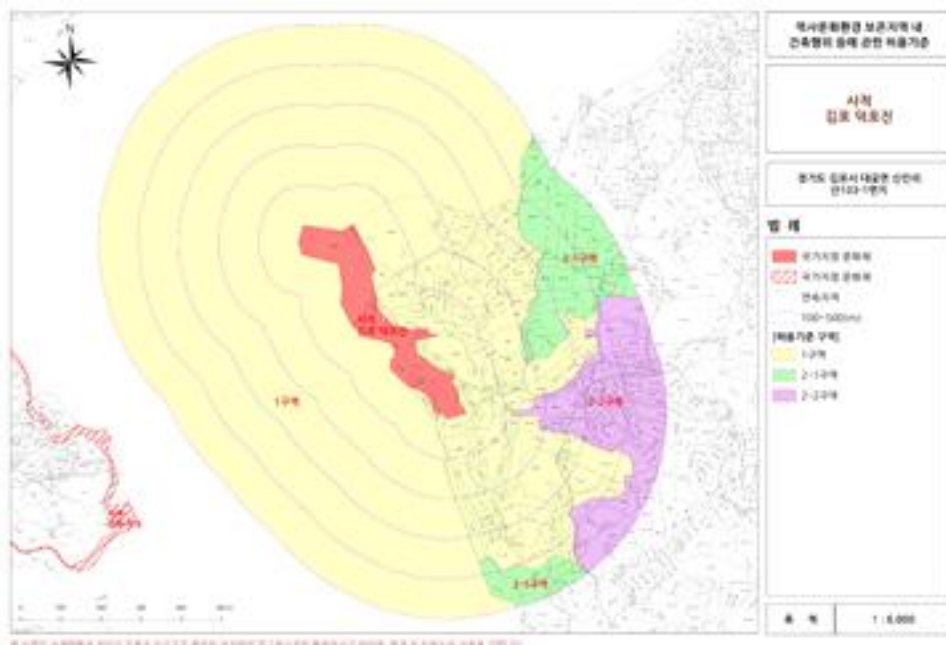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김포 덕포진」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포 덕포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조정안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10.24.~11.12.(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덕포진(사적 / 1981.09.2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1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기존(2019.7.9.)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용도범위 관련 법령을 명시, 지침 준용하여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등은 개별검토함.		발전시설(태양광 등)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삭제		고도제한 높이를 고려하여 규모 제한 삭제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심의함		○ 삭제		타법에서 처리할 사항 제외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구분	기존(2019.7.9.)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존구역에서 유적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함		○ 삭제		불필요한 권장 조항 삭제

21. 김포 문수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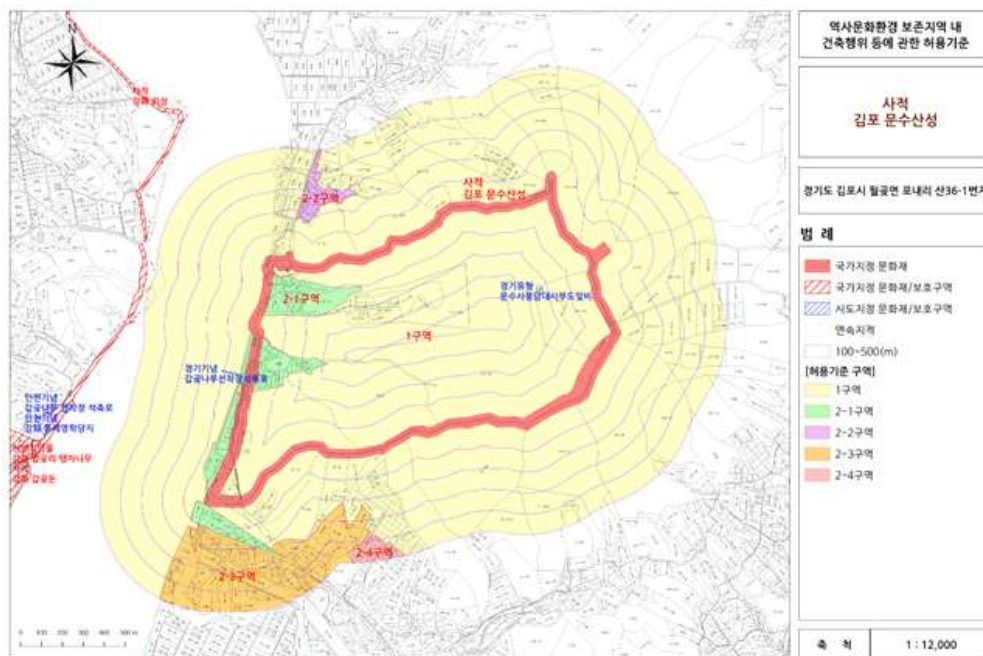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김포 문수산성」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포 문수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조정안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10.24.~11.12.(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문수산성(사적 / 1964.08.29.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5-1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기준(2021.12.20.)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 개별검토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 개별검토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 최고높이 7.5m 이하	개별검토 용어수정, 층수제한 규제삭제
2-2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2-3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3층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층수제한 규제삭제
2-4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4층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 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개·재축 허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제2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터파기(지표면에서 1m 이상) 공사를 발굴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 삭제		타법에서 처리할 사항 제외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함.		○ 삭제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필요사항 선택 적용
<신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신설>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검토함			

구분	기존(2021.12.20.)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신설>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신설>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2. 이천 설봉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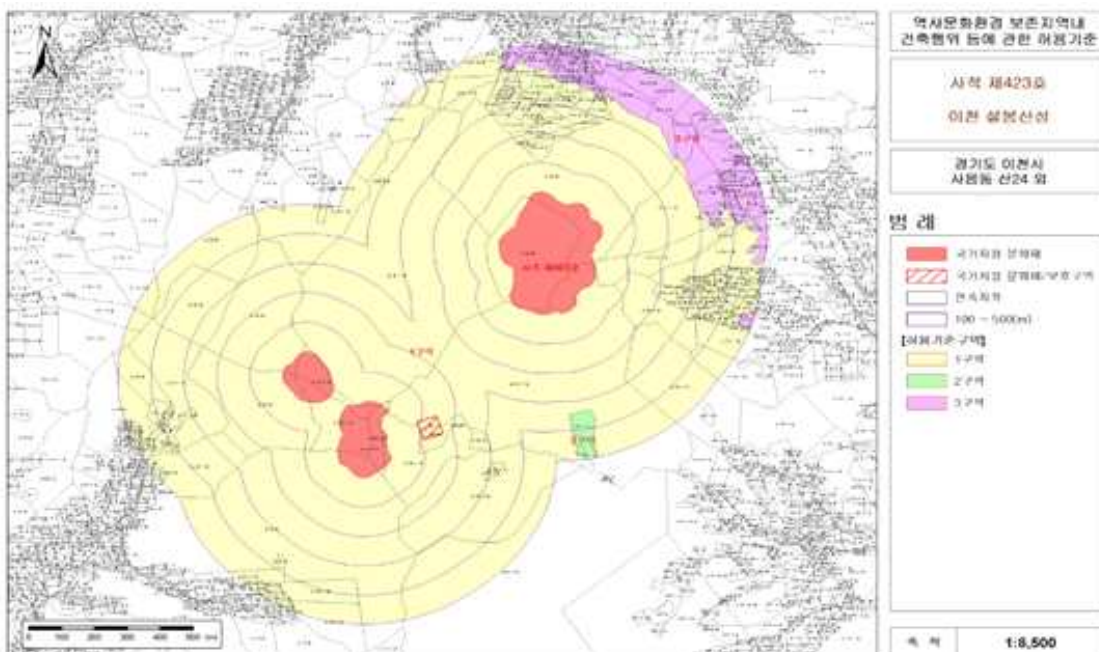
경기도 이천시 소재 사적 「이천 설봉산성」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이천 설봉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조정안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10.26.~11.14.(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이천 설봉산성(사적 / 2000.09.16.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기존(2016.12.30.)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구역	○ 보물 제822로 영월암마애여래입상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 보물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지정번호 삭제
3구역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경사지붕 기준 명시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검토함.		용도범위 관련 법령을 명시, 개별검토 용어수정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토지·임야의 형질변경은 개별심의 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대상 명확히 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시설물 통합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삭제		타법에서 처리할

구분	기존(2016.12.30.)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에 따라 처리함.				사항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 고시된 사항은 그에 따름		○ 삭제		불필요한 권장 조항 삭제

23.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 3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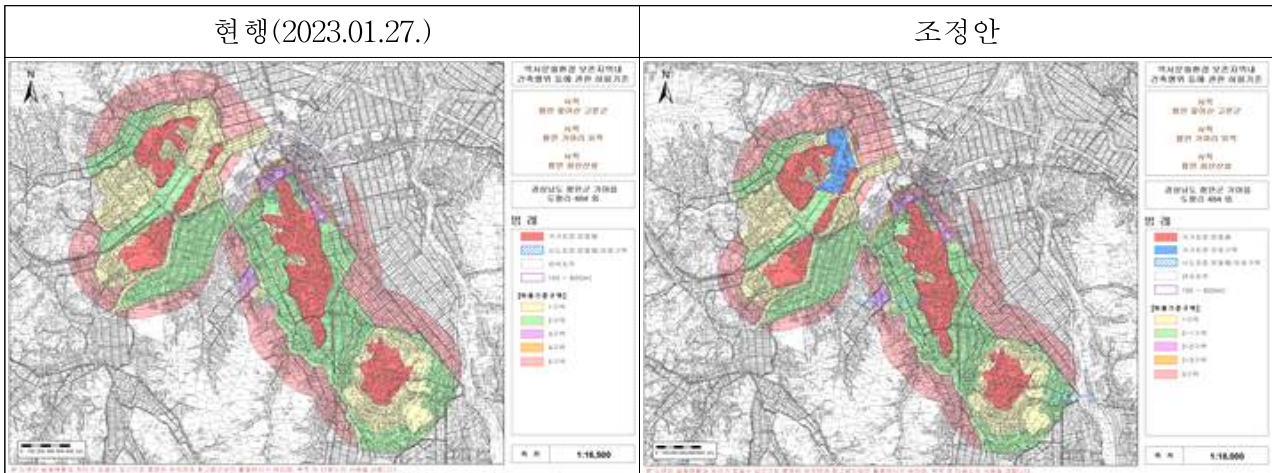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함안 가야리 유적」, 「함안 성산산성」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함안 가야리 유적의 사적 추가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2023.03.17.)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 2019.10.21. 지정),
함안 가야리 유적(사적 / 2011.07.28. 지정),
함안 성산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도항리, 광정리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표(문구조정)

구분	허용기준 조정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 개별검토		
<u>2-1구역</u>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것
<u>2-2구역</u>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u>2-3구역</u>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u>3구역</u>	○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삭제) 		

24. 대구 불로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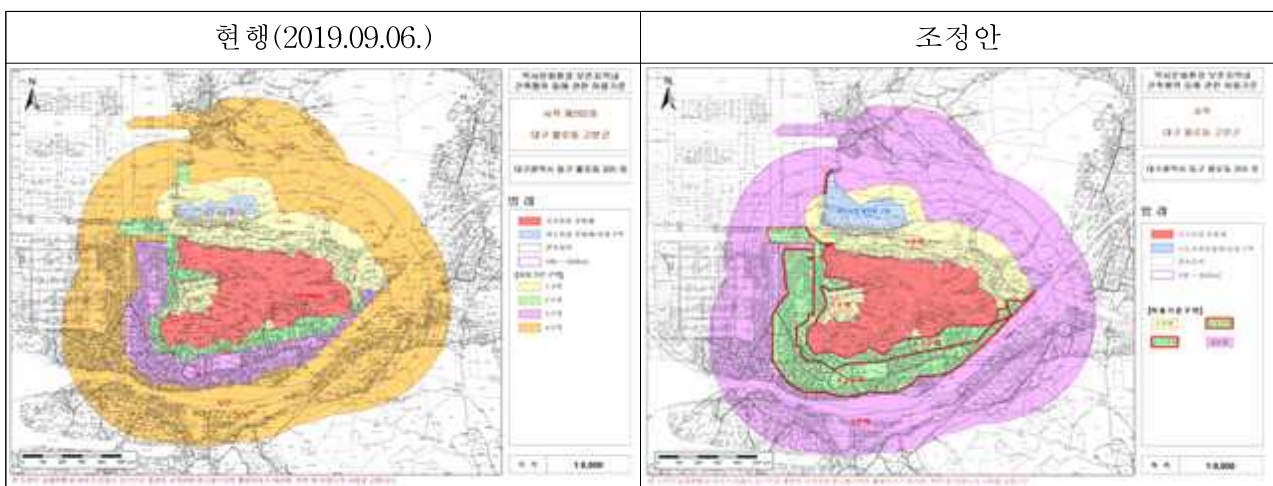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사적 「대구 불로동 고분군」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불로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9.~'23.11.07.)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불로동 고분군(사적 / 1978.06.23. 지정)
 - 소재지 : 대구시 동구 불로동 335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9.09.06.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u>2-1 구역</u>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u>2-2 구역</u>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u>3구역</u>	○ <u>좌동</u>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2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32m 10층 이상의 건물신축 시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검토함.(단, 허용기준 2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태양광 시설은 면적 20㎡미만으로 설치 가능.(2-1, 2-2구역 적용) ○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1, 2-1, 2-2구역 적용)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m 1, 2-1, 2-2구역 적용) 		

구분	현행(2019.09.06.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25. 달성 도동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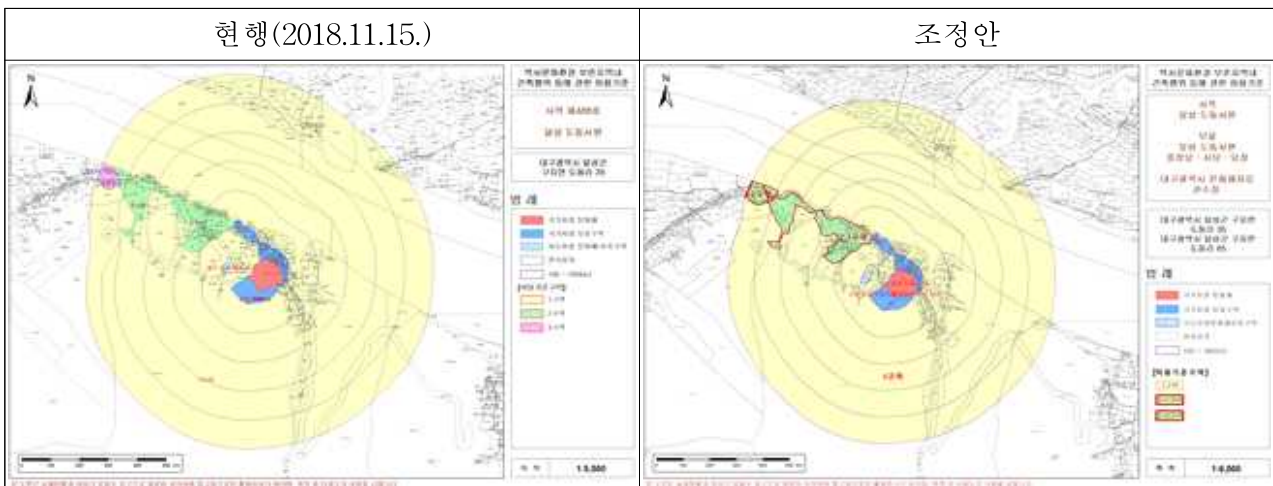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사적 「달성 도동서원」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달성 도동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달성 도동서원(사적 / 2007.10.10. 지정)
 - 소재지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8.11.15.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u>2-1 구역</u>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u>2-2 구역</u>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재축 허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에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에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u>발전시설(태양광등)</u>,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6. 대구 구암동 고분군 등 2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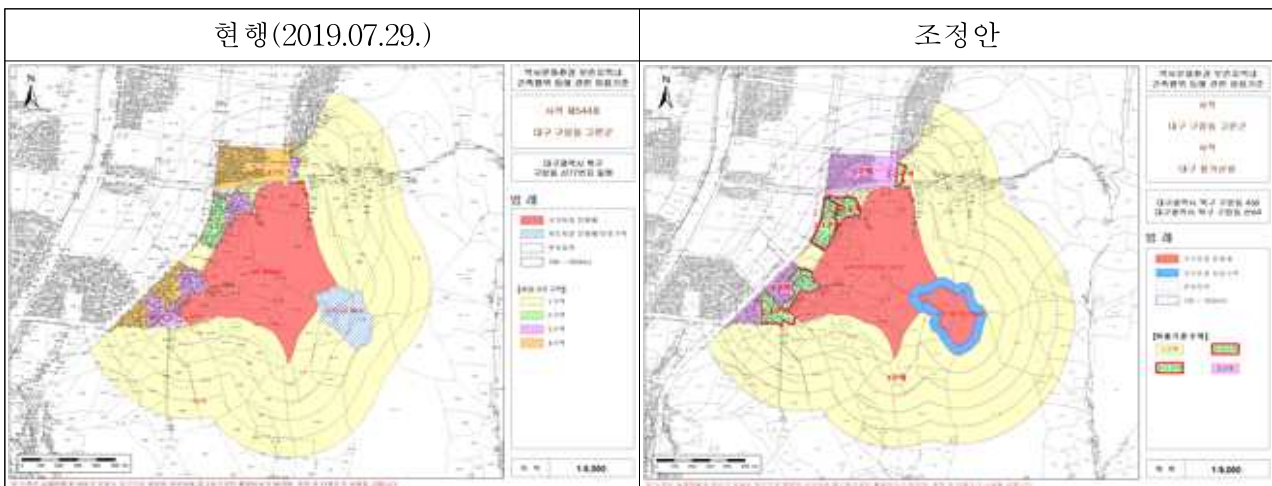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사적 「대구 구암동 고분군」 등 2건 주변 국가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구암동 고분군, 대구 팔거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구암동 고분군(사적 / 2018.08.07. 지정),
대구 팔거산성(사적 / 2023.06.27. 지정)
- 소재지 : 대구시 북구 구암동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9.07.29.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u>2-1</u>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u>2-2</u> 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u>3</u> 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2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32m 10층 이상의 건물신축 시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 2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7. 인천 계양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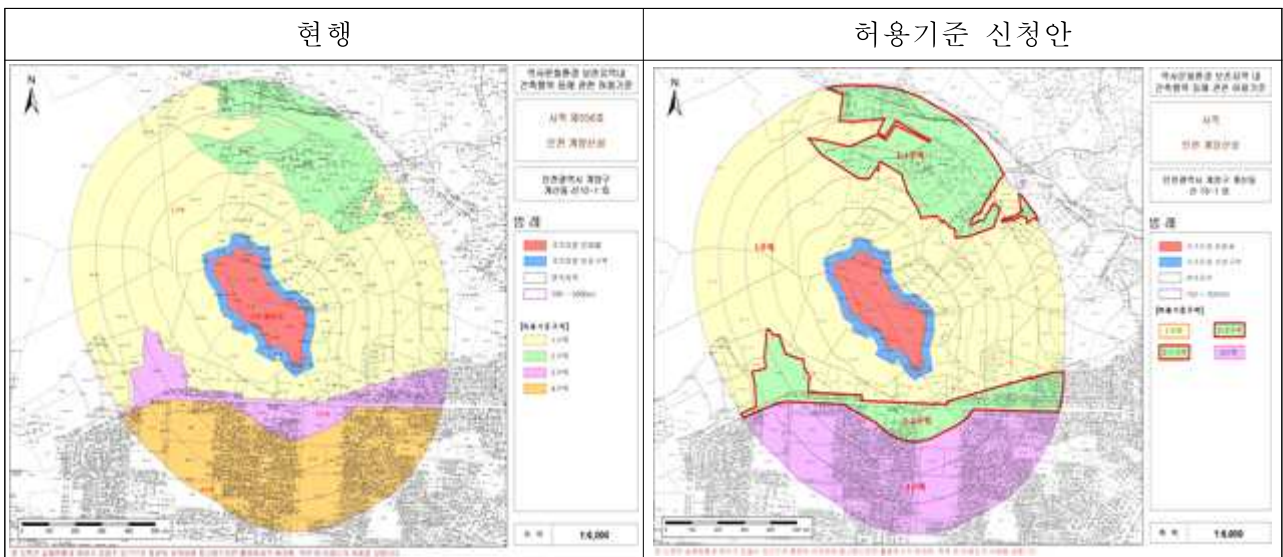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사적 「인천 계양산성」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천 계양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25.~'23.11.13.)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인천 계양산성(사적 / 2020.05.22.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산 10-1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20.12.29.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2-1 구역	○ 좌동	○ 좌동
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2-2 구역	○ 좌동	○ 좌동
4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좌동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좌동 ○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삭제(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의 문화재에 적용 할 사항)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삭제(법령중복)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좌동 		

28. 강화 삼량성 등 7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삼량성」 등 7곳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삼량성 등 7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통합안)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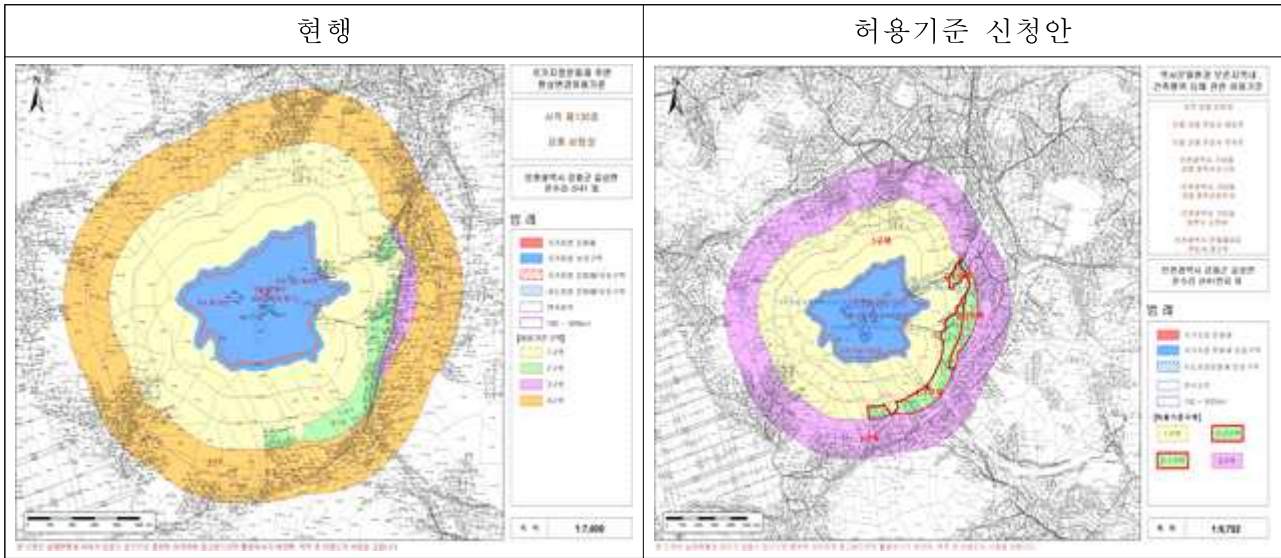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삼량성(사적 / 1964.06.10. 지정),
강화 전등사 대웅전(보물 / 1963.01.21. 지정),
강화 전등사 약사전(보물 / 1963.01.21. 지정),
강화 정족산사고지(시기념물 / 2014.04.16. 지정),
강화 정족산성진지(시기념물 / 2014.04.16. 지정),
양헌수 승전비(시기념물 / 1995.11.15. 지정),
전등사 대조루(문화재자료 / 1995.03.02.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등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5.01.23.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통합고시	
	- 대상문화재: 강화 삼랑성			- 대상문화재: 강화 삼랑성, (보물)강화 전등사 대웅전·강화 전등사 약사전, (시도기념물)강화 정족산사고지·강화 정족산성진지·양현수 승전비, (문화재자료)전등사 대조루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u>인천광역시</u>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 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자원순환</u> 관련시설, <u>발전시설(태양광 등)</u> , 동물 및 <u>식물</u>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u> (<u>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 ○ <u>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u> ○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 ○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
--	--

29.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및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등 9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및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등 9곳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및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등 9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통합안)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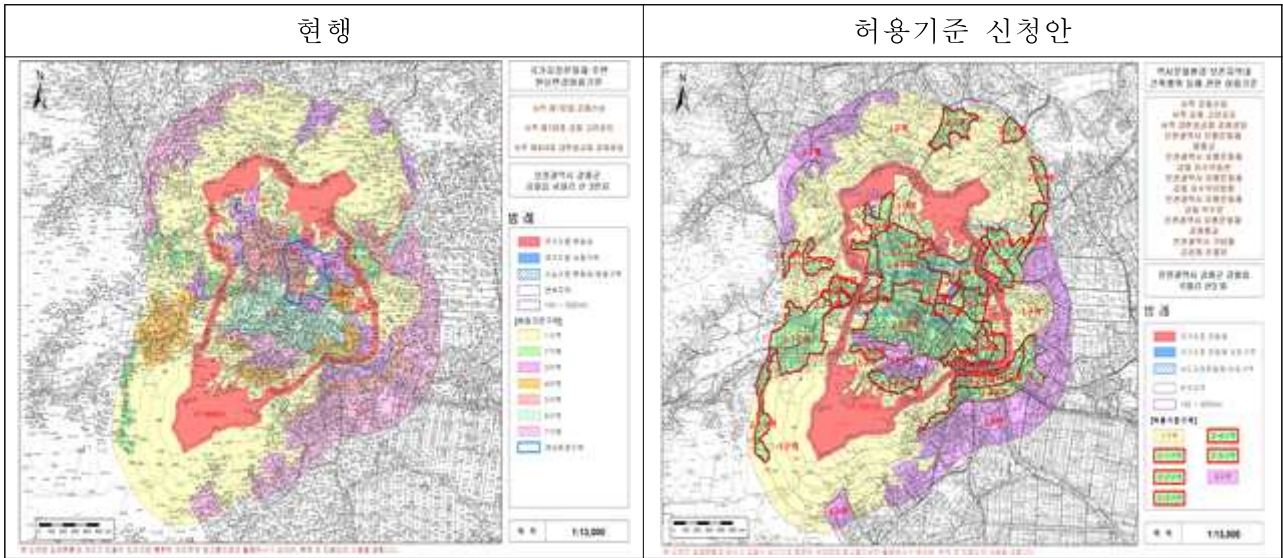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 1964.06.10. 지정),
강화 고려궁지(사적 / 1964.06.10. 지정),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사적 / 2001.01.04. 지정),
용흥궁(시유형문화재 / 1995.03.02. 지정),
강화유수부 동헌(시유형문화재 / 1995.03.02. 지정),
강화유수부 이방청(시유형문화재 / 1995.03.02. 지정),
강화 석수문(시유형문화재 / 1995.03.02. 지정),
강화향교(시유형문화재 / 1995.11.15. 지정),
김상용순절비(시기념물 / 1995.11.1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5.05.18.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통합고시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대상문화재: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 대상문화재: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시유형문화재)용흥궁·강화유수부 동헌·강화유수부 이방청·강화 석수문·강화향교, (시기념물)김상용 순절비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3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2-4 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2-5 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7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좌동	
공통사항	○ 관아 추정지역에서 터파기 시 유구조사를 선행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 삭제(법령중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p>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u> ○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u>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 ○ <u>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u> ○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 ○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
---	---

30. 강화 참성단 및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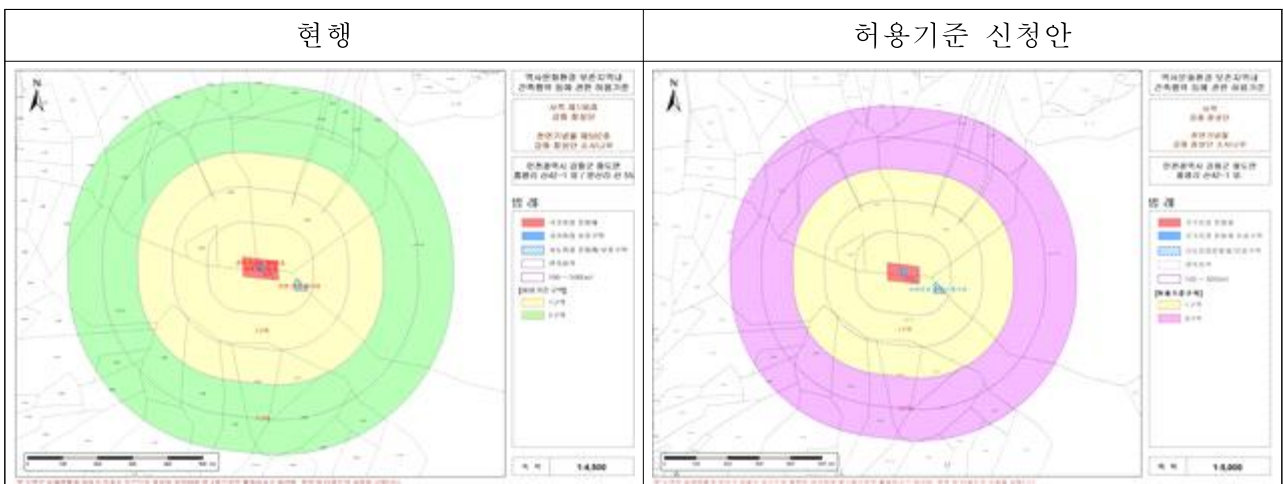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참성단」 및 천연기념물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참성단 및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참성단(사적 / 1964.07.11. 지정),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천연기념물 / 2009.09.16.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홍왕리 산42-1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6.12.28.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u>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u>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송전탑, 통신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u>개별검토</u>함. ○ 송전탑, 통신시설은 <u>개별검토</u>함. ○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u>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u>함. ○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u>함. ○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u>함. 	

31. 강화 부근리 지식묘 및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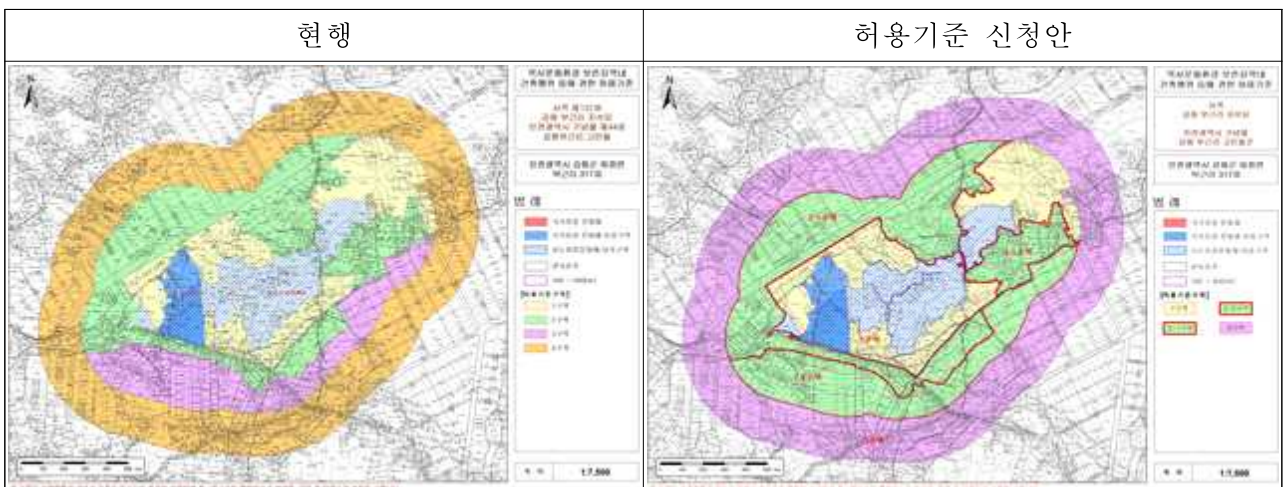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부근리 지식묘」 및 시기념물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부근리 지식묘 및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부근리 지식묘(사적 / 1964.07.11. 지정),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시기념물 / 1999.04.26.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20.04.10.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좌동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을 허용함. ○ 좌동 ○ 좌동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u> ○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u>개별검토함.</u>(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u>개별검토함.</u>(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삭제(법령중복)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u>개별검토함.</u> ○ 좌동 ○ <u>세계유산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봄.</u> 		

32. 강화 홍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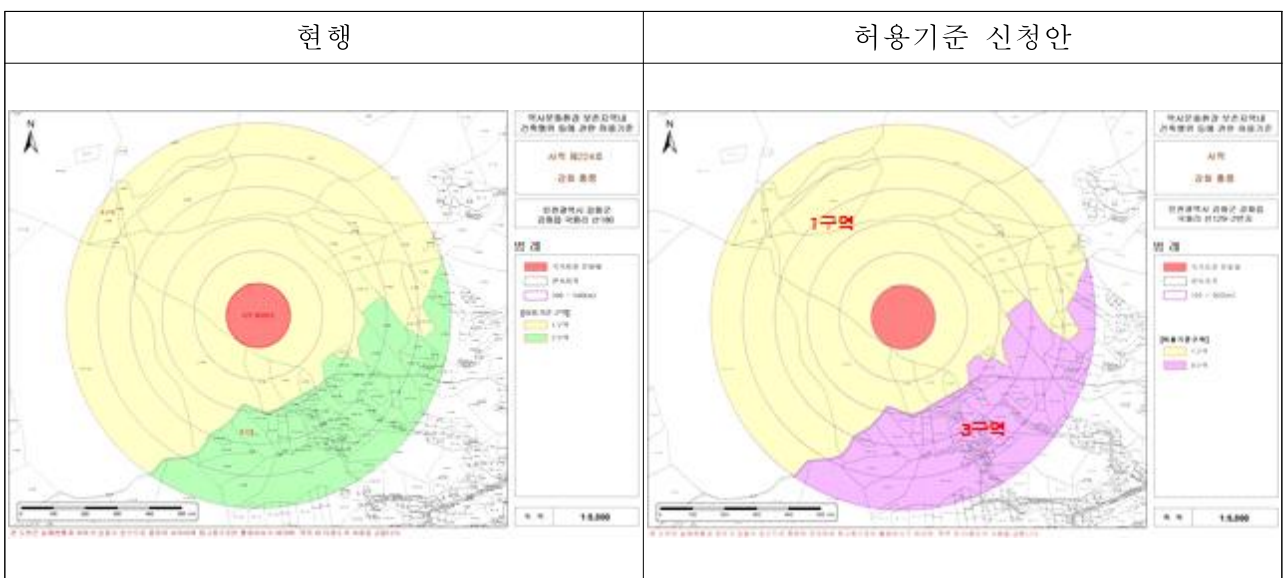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홍릉」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홍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홍릉(사적 / 1971.12.29.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29-2번지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6.12.28.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u>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u>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u>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 ○ <u>토석의 굴취 또는 채취는 개별검토함.</u> ○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 ○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 	

33. 강화 외성 등 6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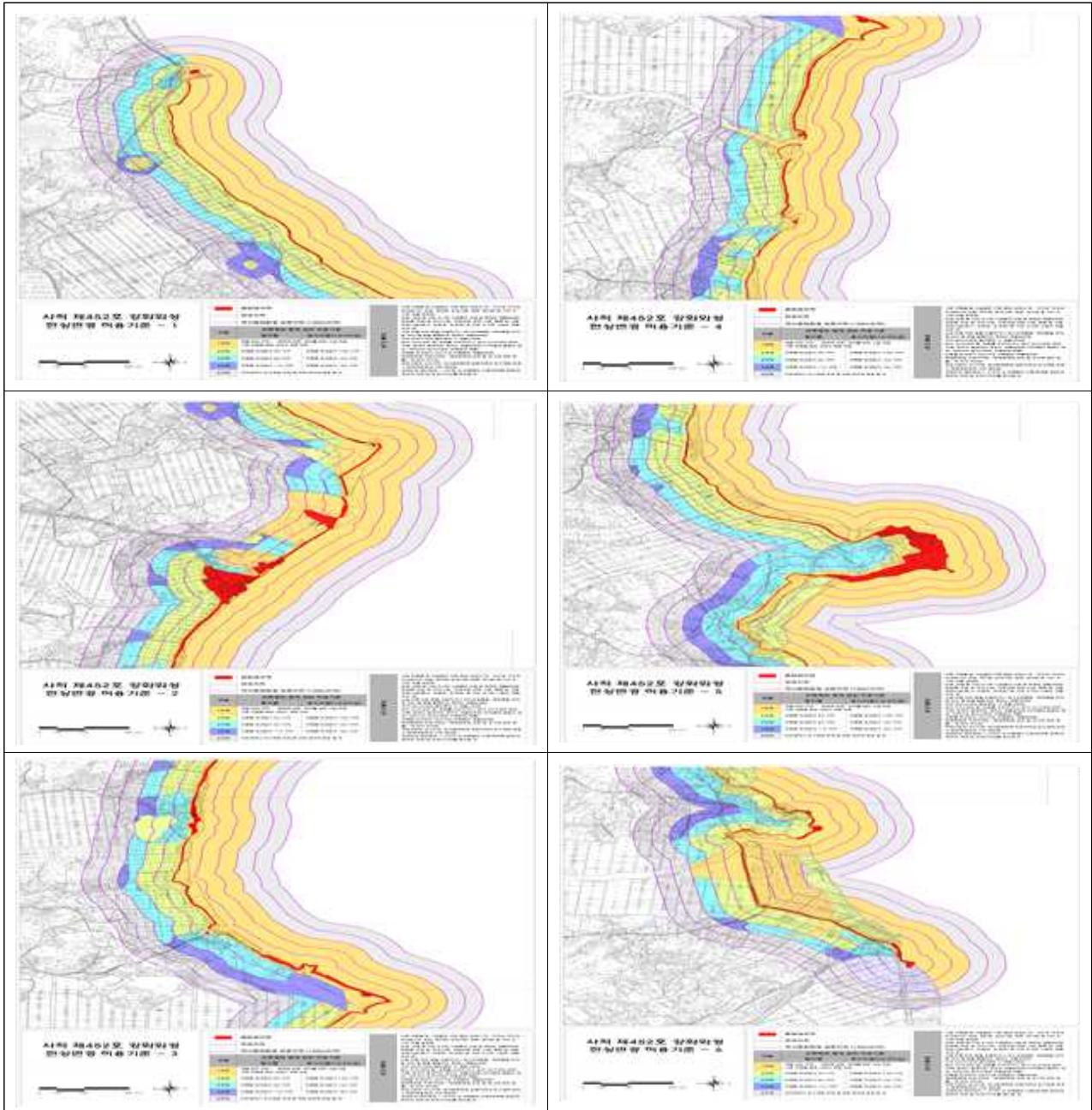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외성」 등 6곳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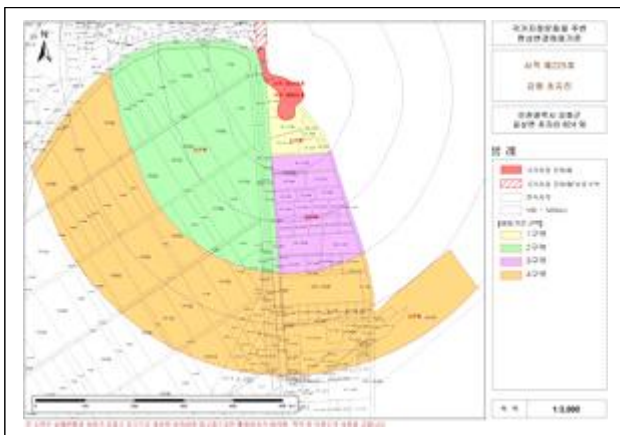
- 강화 외성 등 6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통합안)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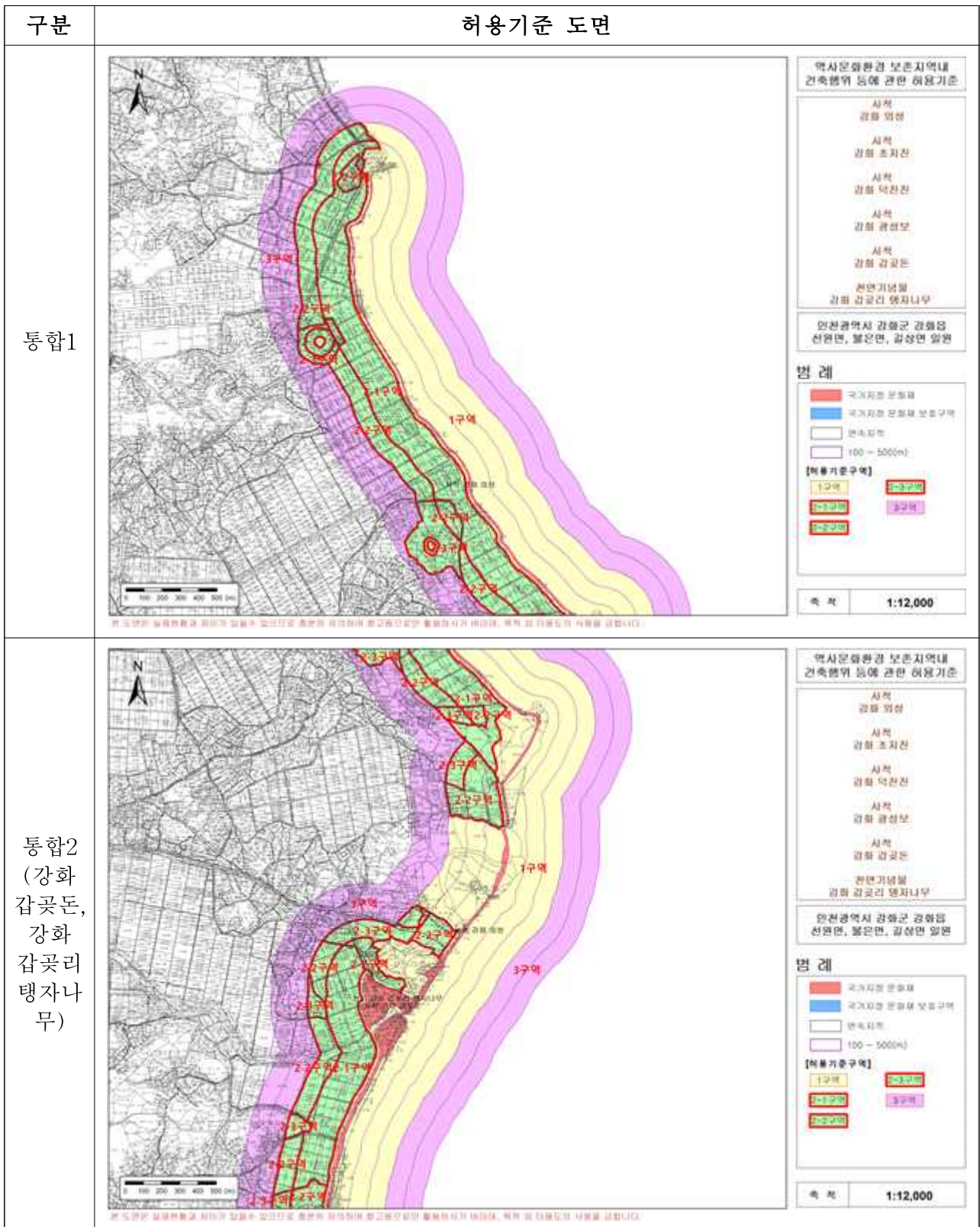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 2003.10.25. 지정),
강화 초지진(사적 / 1971.12.29. 지정),
강화 덕진진(사적 / 1971.12.29. 지정),
강화 광성보(사적 / 1971.12.29. 지정),
강화 갑곶돈(사적 / 1984.08.13. 지정),
강화 갑곶리 탕자나무(천연기념물 / 1962.12.07.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강화읍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 허용기준 도면(현행)
 - 강화 외성, 강화 덕진진, 강화 광성보, 강화 갑곶돈, 강화 갑곶리 탕자나무



- 강화 초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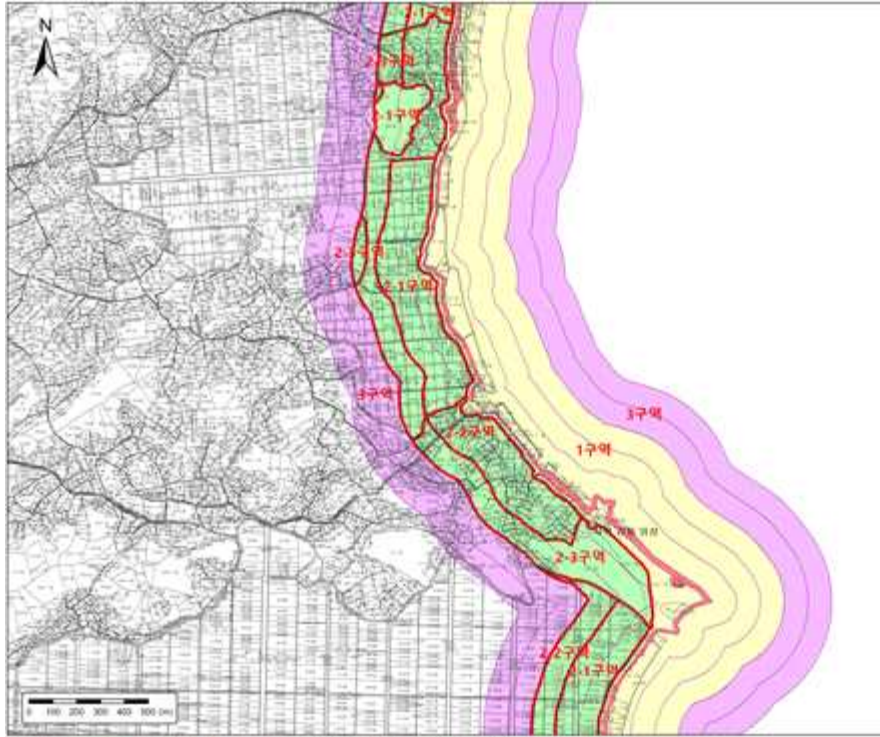
○ 허용기준 통합 도면(변경 후)



구분

허용기준 도면

통합3



역시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시적 경류 외형
- 시적 감회 초지선
- 시적 감회 덕진선
- 시적 감회 골선보
- 시적 감회 골곶선
- 자연기념물 감회 골곶리 땃자나무

자연경역시 강해군 강회읍 선원면, 불은면, 갈성면 일원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 면적지표
- 100 - 50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2-3구역
- 3-1구역
- 3-2구역

축척 1:12,000

본 도면은 보충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현장에 당황하여 참고용도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단면도의 사물을 금합니다.

통합4



역시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시적 경류 외형
- 시적 감회 초지선
- 시적 감회 덕진선
- 시적 감회 골선보
- 시적 감회 골곶선
- 자연기념물 감회 골곶리 땃자나무

자연경역시 강해군 강회읍 선원면, 불은면, 갈성면 일원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 면적지표
- 100 - 50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2-3구역
- 3-1구역
- 3-2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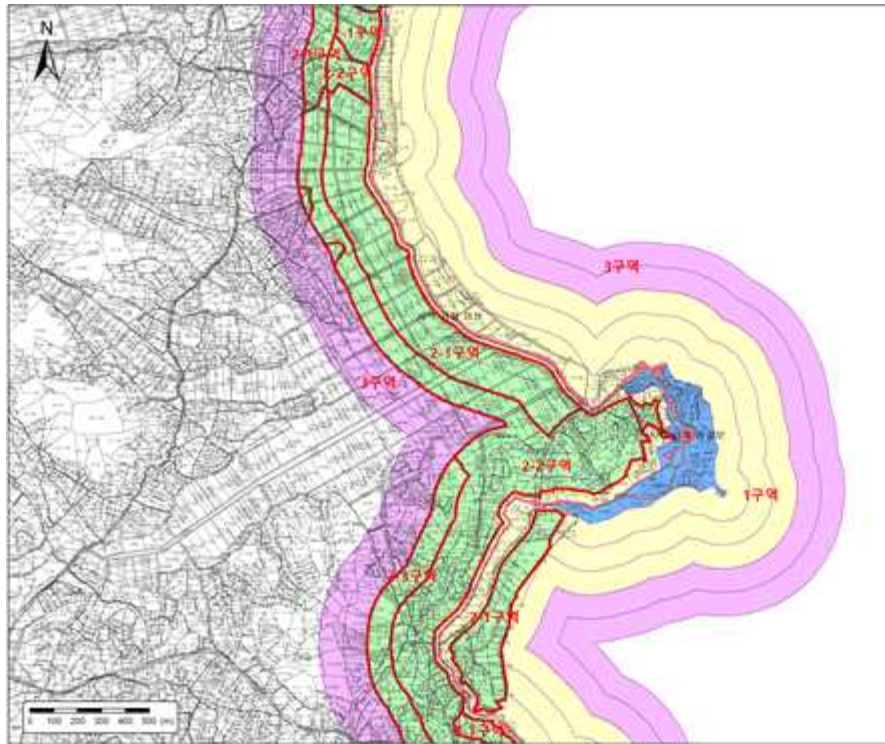
축척 1:12,000

본 도면은 보충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현장에 당황하여 참고용도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단면도의 사물을 금합니다.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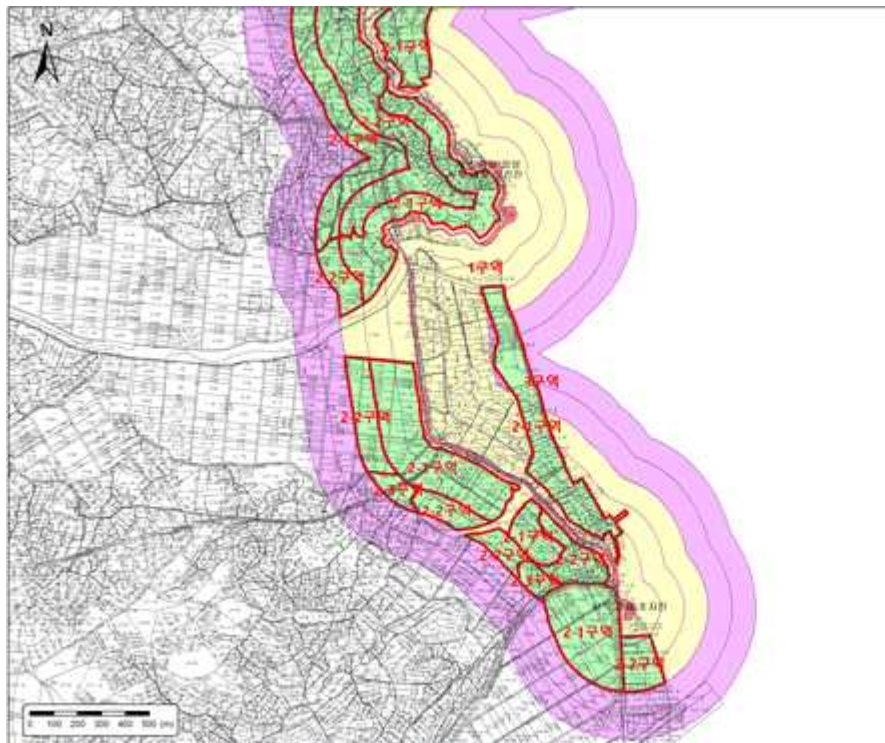
허용기준 도면

통합5
(강화
광성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축척에 의거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축척 및 적용도장 시기를 금합니다.

통합6
(강화
덕진진,
강화
초지진)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축척에 의거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축척 및 적용도장 시기를 금합니다.

○ 허용기준 비교표

- 강화 외성

구분	현행: 2018.06.26.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통합고시	
	- 대상문화재: 강화 외성			- 대상문화재: 강화 외성, 강화 초지진, 강화 덕진진, 강화 광성보, 강화 갑곶돈, (천연기념물)강화 갑곶리 탕자나무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3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준용 할 것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는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삭제(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의 문화재에 적용 할 사항)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는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강화 외성 밖의 1~2구역 내 건축물 신축(재·개축 포함)시 강화군의 색채 및 조정 가이드를 준수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u> ○ 삭제(법령중복) ○ 좌동 ○ 1~2구역 내 건축물 신축(개·재축 포함)시 강화군의 색채 및 조정 가이드를 준수할 것 ○ <u>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u>
---	--

- 강화 초지진

구분	현행: 2015.01.23.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통합고시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신설>		2-3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좌동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진 북측은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통합고시 할 경우 불필요)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u> ○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u>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p>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 ○ <u>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u> ○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 ○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 ○ <u>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u> ○ <u>1~2구역 내 건축물 신축(개·재축 포함)시 강화군의 색채 및 조경 가이드를 준수할 것</u>
---	---

- 강화 덕진진, 강화 광성보, 강화 갑곶돈

구분	현행: 2021.03.23.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통합고시	
	- 대상문화재: 강화 덕진진, 강화 광성보, 강화 갑곶돈			- 대상문화재: 강화 외성 등 6곳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의 ○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1층)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3층)	2-3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준용 할 것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u>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u> ○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 		

	<신설>	○ <u>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u>
	<신설>	○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
	<신설>	○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u>
	<신설>	○ <u>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u>
	<신설>	○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
	<신설>	○ <u>1~2구역 내 건축물 신축(개·재축 포함)시 강화군의 색채 및 조경 가이드를 준수할 것</u>
	<신설>	○ <u>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u>

34. 강화 선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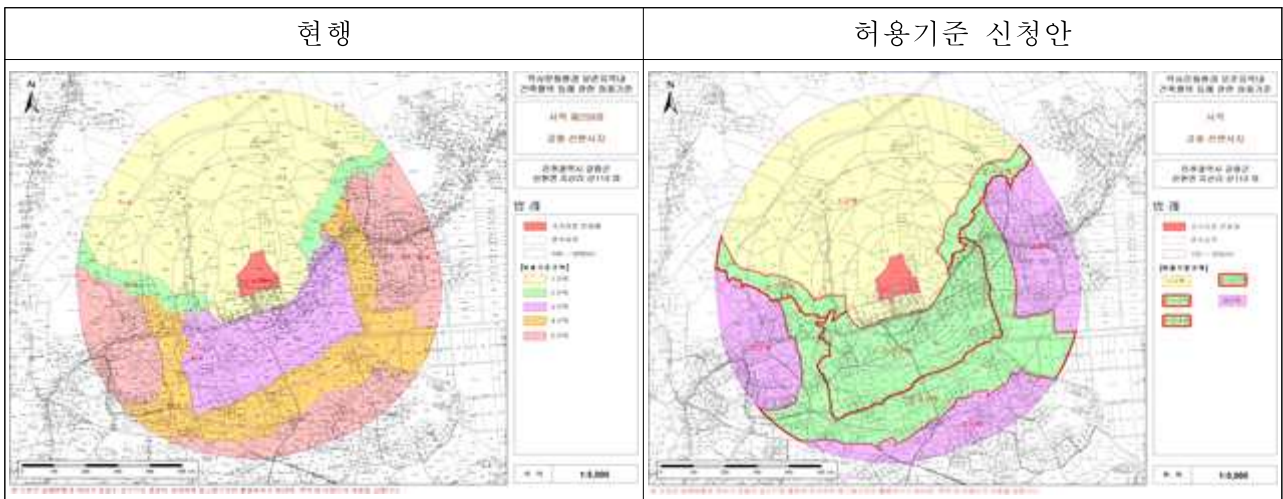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선원사지」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선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선원사지(사적 / 1977.11.29.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산133번지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20.04.22.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3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좌동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약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을 허용함. ○ 좌동 ○ 좌동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u>발전시설(태양광 등)</u>,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u>개별검토</u>함. ○ 삭제(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의 문화재에 적용 할 사항)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u>개별검토</u>함. ○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u>개별검토</u>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삭제(법령중복)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u>개별검토</u>함. ○ 좌동 		

35. 강화 석릉 및 강화 곤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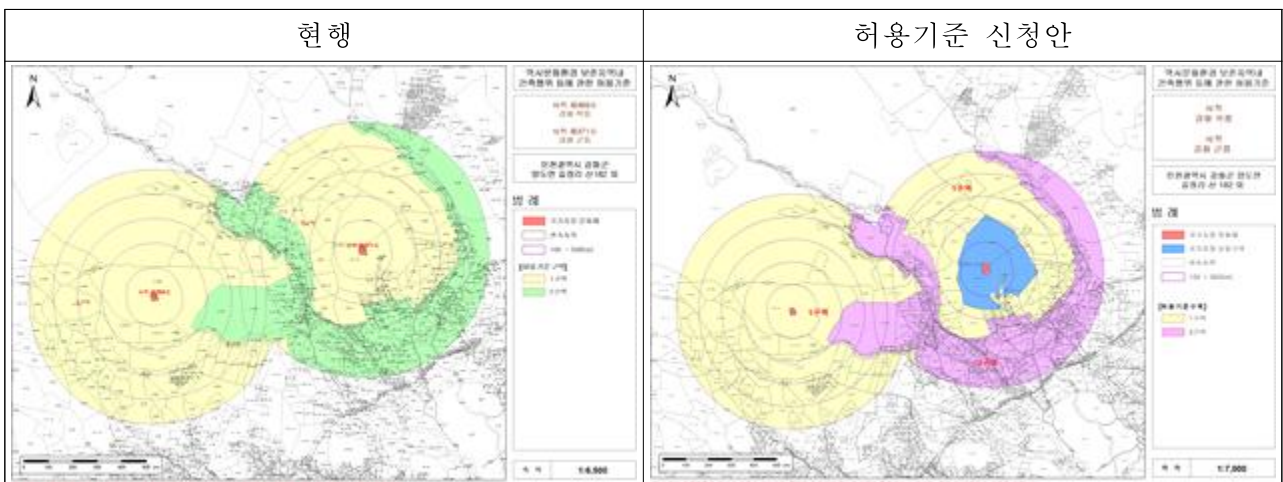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석릉」 및 「강화 곤릉」 주변 국가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석릉 및 강화 곤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석릉(사적 / 1992.03.10. 지정),
강화 곤릉(사적 / 1992.03.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6.12.28.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u>좌동</u>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u>발전시설(태양광 등)</u>, 동물 및 <u>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u>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u>개별검토</u>함. ○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벌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u>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u>함. ○ <u>토석의 굴취 또는 채취는 개별검토</u>함. ○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u>함. ○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u>은 개별검토함. 	

36. 강화 가릉 및 강화 능내리 석실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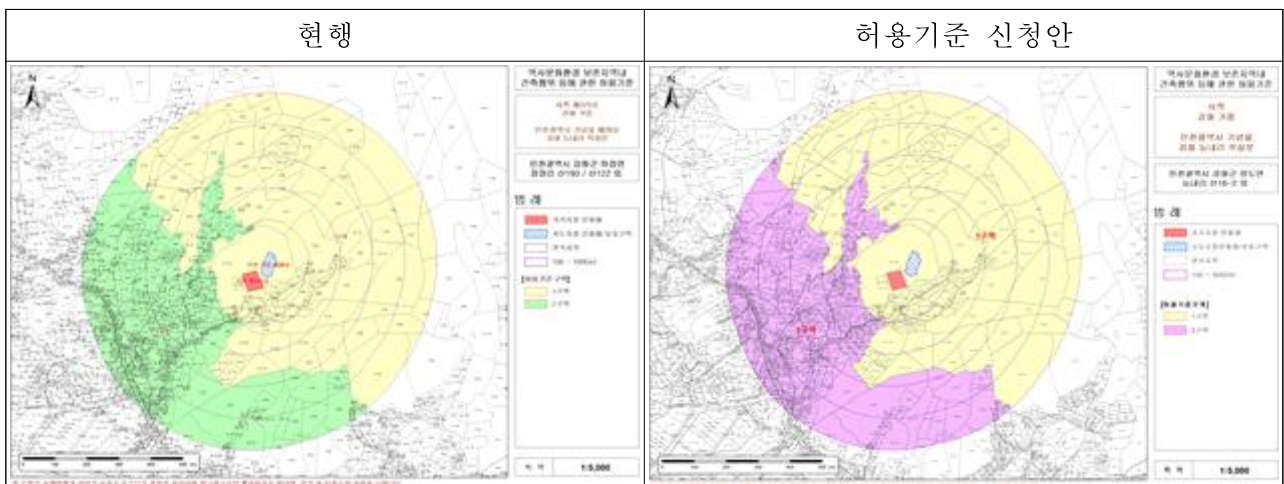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가릉」 및 시기념물 「강화 능내리 석실분」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가릉 및 강화 능내리 석실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가릉(사적 / 1992.03.10. 지정),
강화 능내리 석실분(시기념물 / 1995.03.02.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16-2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6.12.28.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u>좌동</u>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u>개별검토함.</u> ○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u> ○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 ○ <u>토석의 굴취 또는 채취는 개별검토함.</u> ○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 ○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 	

37.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 : '23.10.20.~11.09.(20일간)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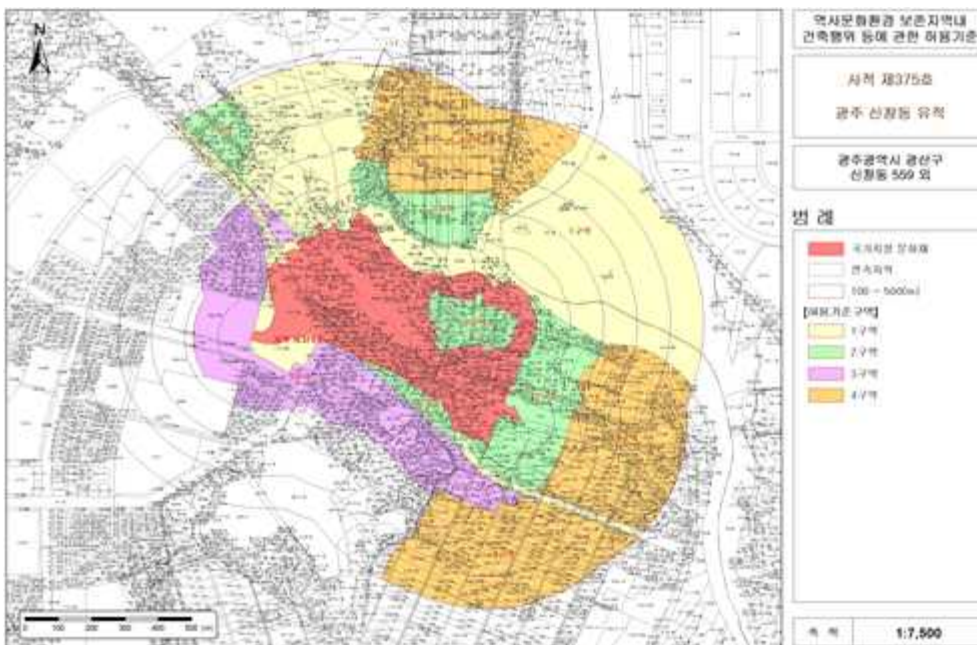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신창동 유적(사적 / 1992.09.09. 지정)

○ 소재지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512-1번지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9.09.16.)고시		금회 신청 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재축 시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으로 함 - 하천 유지보수 및 정비 제외		○ 개별검토 - 개·재축 시 경사지붕으로 함 - 하천 유지보수 및 정비 제외		개별검토 용어수정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경사지붕 높이조정
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자구수정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자구수정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자구수정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경사지붕 기준추가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발전시설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높이 3m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절성토 내용추가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태양광, 야간조명 등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빔공해 시설은 개별 심의함		<삭제>		중복내용 삭제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		<삭제>		타법에서

구분	현행(2019.09.16.)고시		금회 신청 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처리할 사항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 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8.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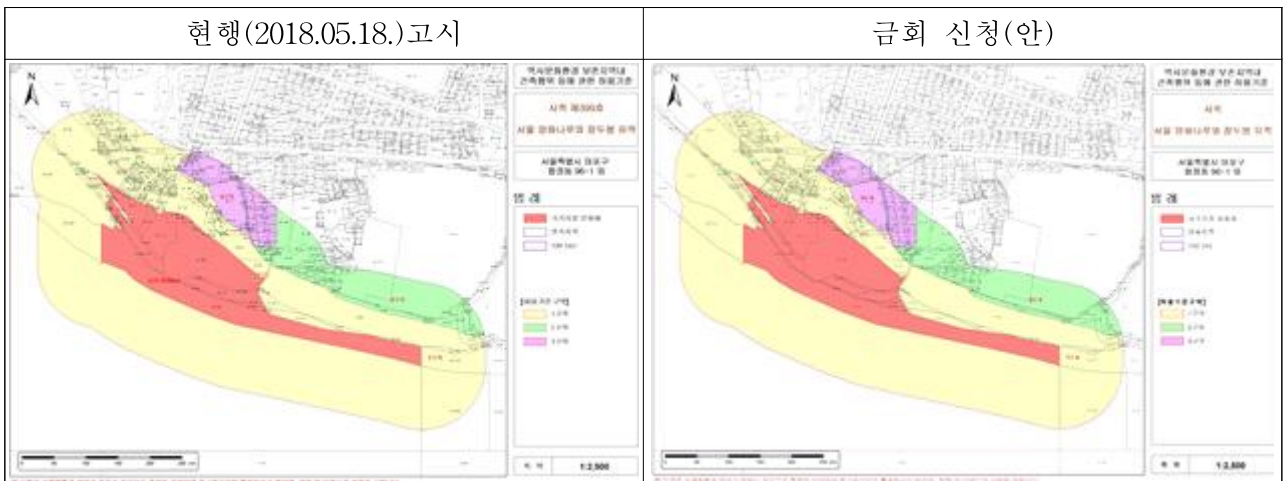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사적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주변 국가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23.10.17.~11.06.)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사적 / 1997.11.1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96-1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8.05.18.)고시		금회 신청(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 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23m 이하	○ 최고높이 26m 이하	○ 최고높이 23m 이하	○ 최고높이 26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 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은 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9.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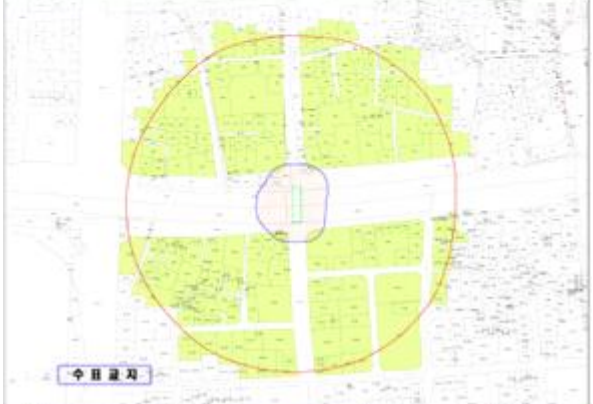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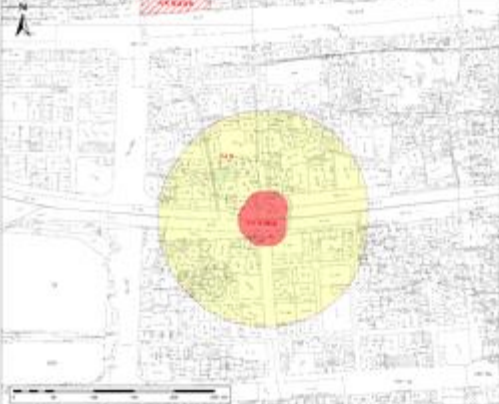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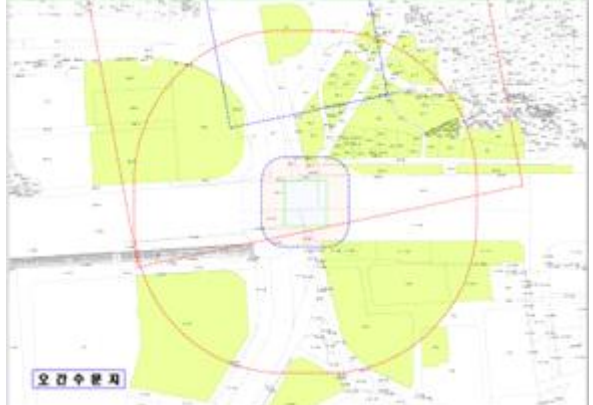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23.10.30.~11.18.)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사적 / 2005.03.25.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270-1번지 외, 중구 남대문로 9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현행(2008.06.17.)고시	금회 신청(안)
 <p>보통밀지</p>	 <p>보통밀지</p>
 <p>수원밀지</p>	 <p>수원밀지</p>
 <p>오전수원지</p>	 <p>오전수원지</p>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8.05.18.)고시	금회 신청(안)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조건을 선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인근지역 재개발시에는 동 문화재의 원위치 복원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 확보토록 함. ○ 서울청계천유적과 흥인지문(보물 제1호), 보신각(서울특별시기념물 제10호) 주변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범위가 중첩된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현행 양각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함. - 사적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인근지역 재개발시에는 동 문화재의 원위치 복원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 확보토록 함.
공통 사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1구역 사항을 공통사항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청계천 유적과 흥인지문, 보신각터 주변의 허용기준이 중첩된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0. 서울 초안산 분묘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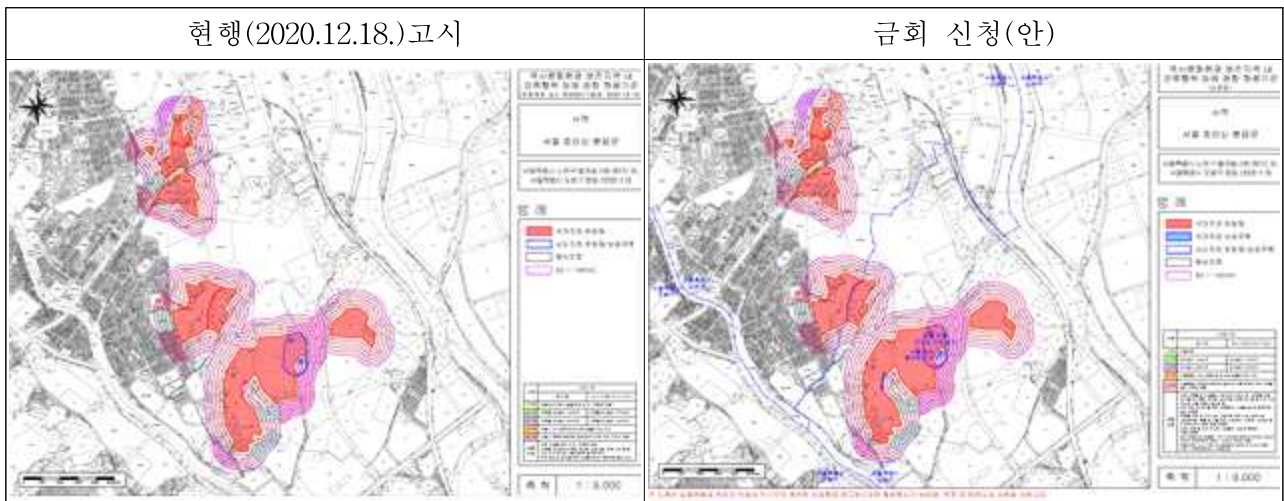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사적 「서울 초안산 분묘군」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초안산 분묘군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노원구 '23.10.05.~10.25. / 도봉구 '23.11.09.~11.29.)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초안산 분묘군(사적 / 2002.03.09.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8-3 외, 도봉구 창동 산202-1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20.12.18.)고시		금회 신청(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 최고높이 23m 이하
4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에 의거한 양각 27도선 적용		○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	
공통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최고높이 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 문화재청 별도 심의		<삭제>	
	<신설>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은 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신설>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신설>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1.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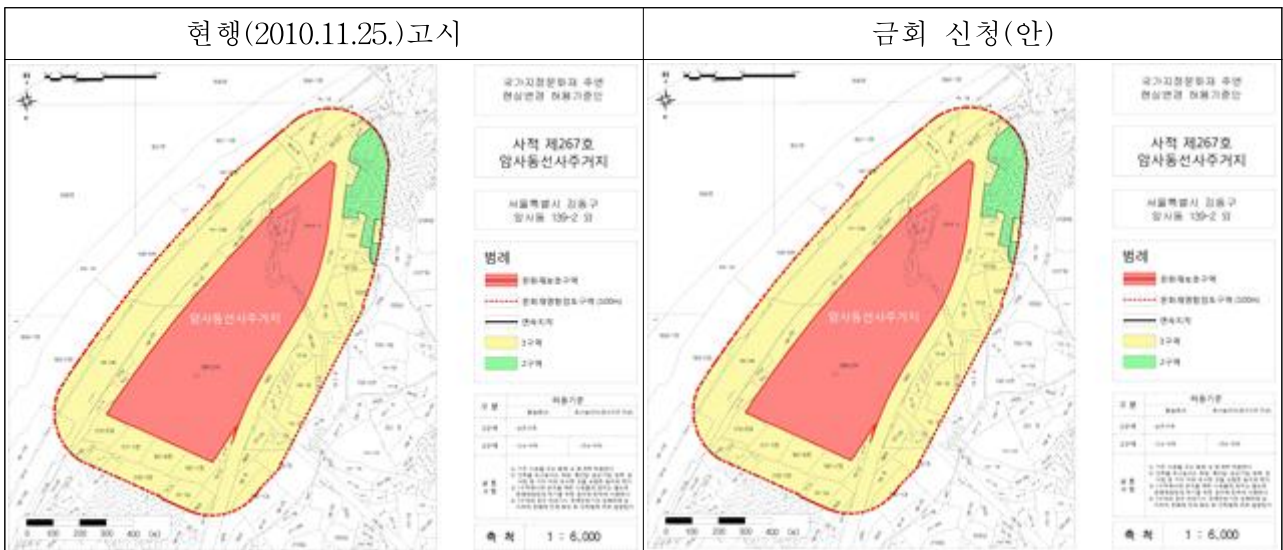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사적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23.10.31.~11.20.) : 의견 있음(1건)
 - (○○○) 공통사항 중 동물관련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 1979.07.26.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2동 155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0.11.25.)고시		금회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평지붕 높ಿಯ오기
공통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는 별도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삭제>		
	○ 2구역의 경우 건축물 건립을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존재를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삭제>		
	<신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 동물관련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주민의견 검토필요
	<신설>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신설>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2. 서울 선잠단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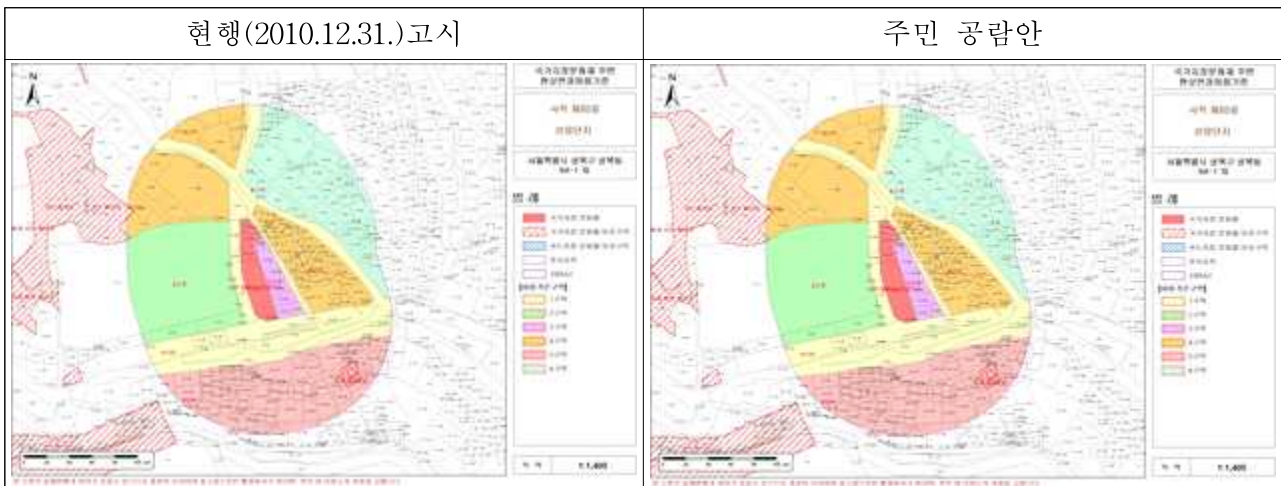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서울 선잠단지」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선잠단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23.10.05.~10.25.) : 의견 있음(1건)
 - (○○○) 문화재지정구역 내 2필지(성북동 63-1, 63-9) 지정해제 요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선잠단지(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64-1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0.12.31.)고시		금회 신청 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보존구역)		○ 개별검토(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 심의구역		○ 개별검토	
공통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3구역 3층 기준은 도로변 GL 기준에 따름		○ 3구역 최고높이 기준은 도로변 GL 기준에 따름.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검토	
	<신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신설>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신설>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3-12-043

1.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관련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토성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 외 12필지
- (3) 신청내용<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당초 : 지정구역 13필지 62,412㎡ / 보호구역 없음
 - 신청 : 보호구역 50필지 113,024㎡ 신규 지정
 - 조정 후 : 지정구역 13필지 62,412㎡, 보호구역 50필지 113,024㎡

< 문화재구역 신청현황 >

구분	지정구역	보호구역	증감
기존	13필지 62,412㎡	-	
신규	-	50필지 113,024㎡	보호구역 신규 지정
조정 후	13필지 62,412㎡	50필지 113,024㎡	

(4) 신청사유

- 익산 백제왕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궁성(宮城)을 방어하는 관방유적인 익산 토성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경관적 가치를 확보하여 고도와 당해 문화유산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과의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구역 설정이 필요

2. 고성 송학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성 송학동 13호분에 연접한 「고성읍 기월리 417-2」 1필지, 390㎡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추가 : 「고성읍 기월리 417-2」 (1필지, 390㎡)

기존 지정면적		금회 추가		조정 후 면적		비고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59,012㎡	8,313㎡	390㎡	-	59,402㎡	8,313㎡	

(4) 추가 사유

- 송학동 고분군 13호분 조사 및 정비·복원 공사를 통해 해당 고분의 실제 범위가 지정된 문화재구역보다 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
- 417-2번지는 13호분 봉토조성을 위해 축조된 고분 기저부의 일부로서 확대 지정 필요

3.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등)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재구역 조성(추가 지정 및 해제 등)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재구역 지번을 현행화(분할, 합병, 누락 등)하고 합리적으로 문화재구역을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 1985.02.23.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일원
- (3) 신청내용
 - 지번 현행화(분할, 합병, 누락 등) : 85필지(28,834㎡)

구분	필지수	지적면적(㎡)	지정면적(㎡)	비고
누락필지추가	6	12,169	11,975	기고시 면적과 상이
등록추가	15	(216)	(216)	기고시 면적과 상이
분할추가	47	309	309	기고시 면적과 상이
신규등록	3	3,850	3,850	기고시에서 면적 증가
제외	(4)	(1,734)	(1,734)	기고시에서 면적 감소
합병말소	(10)	0	0	
면적상이		10,829	9,481	기고시 면적과 상이
면적정정		(6,071)	(1,269)	기고시 면적과 상이

-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 지번 현행화 포함

구분	기존 지정면적		금회 신청 면적				조정 후 면적*	
			추가 지정 면적		해제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314	25,439,329	84	785,847	677	1,170,433	1,795	25,074,928
문화재구역	2,314	25,439,329	84	785,847	677	1,170,433	1,795	25,054,743

(4) 조정 사유

- 최초 지정 1985년으로부터 38년이 지나 필지의 합병, 분할, 소유자 변경 등 현행화 필요
- 발굴 및 정비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
- 최초 지정 당시 임의적 일괄 지정된 불합리한 문화재구역을 조정하여 합리적 규제완화 필요

4. 익산 미륵사지 내외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미륵사지」의 노후 관리사를 개축하여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익산 미륵사 복원정비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현재 미륵사 복원정비 심화연구를 추진 중임.
- 미륵사지 출토 석부재들은 현재 야외에 노출된 상태로, 자연환경으로부터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존가치가 높은 석부재를 선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공간이 필요함.
- 익산시에서 익산 미륵사의 복원고증연구 성과 공유, 석부재의 보관, 미륵사 전반에 대한 교육과 디지털 복원안에 대한 가상체험 등을 통해 국민들과 미륵사의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안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 1966.06.22. 지정)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 (3) 신청내용
 - 익산 미륵사지 노후 관리사 개축
 - 위치 : 현 미륵사지 관리사 및 관광지(상가부지)
 - 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 약1,236㎡(기존 관리사 : 306㎡)
 - 구성 : 연구공간, 수장공간, 체험공간, 관리공간, 교육공간 등
- (4) 신청인 의견
 -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의 경관보존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립 위치, 규모, 형태, 구조 등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신중히 결정하고자 함.

5. 익산 미륵사지 내 경관조명 추가설치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가. 제안사항

2023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미륵사지」 조명 추가공사 설계안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미륵사지 복원정비연구를 실시(2013.01. ~ 2017.03.)하였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익산시에서 익산 미륵사지의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및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미륵사지 경관조명 추가설치안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 1966.06.22. 지정)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 (3) 신청내용
 - 익산 미륵사지 경관조명 추가설치
 - 탐방로 블라드등, 사지 경계 보안등, 건물지 경관조명등, 연지 수목등 설치
 - 배선 배관 및 SMPS설치(기존 분전반 활용)
- (4) 신청인 의견
 - 현재 미륵사지 경관조명은 동·서 석탑, 당간지주, 일부 탐방로만 설치되어 야간 관람에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연지, 계단 등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 조명설치가 필요함
 - 또한 최근 야간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야간관광 활성화 및 문화유산 활용을 위하여 경관조명 보강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3-12-048

1. 2024년 사적분과 문화재현장 위원회 운영 등 보고

가. 제안사항

문화재(사적)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 목적

- 지정된 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운영시기 : 2024년 상·하반기 총 2회 이상
- 현장 선정 기준
 - 최근 3년 내 민원과다, 언론 지적, 국회 등 대외적으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문화재청의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 문화재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의결되는 지역
- 운영방법
 - 현장 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안건은 최대한 지양하고 해당 문화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
 -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지자체 관계자 등 참여의 다양성 강화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사천왕사지」 내 선덕왕릉 입구 하강선길 개선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43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사천왕사지	경북 경주시	○○○	<선덕왕릉입구 하강선길 개선>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138-18 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사업량 : PC암거(2.0×1.5) 설치 L=17m - 토공 : 터파기118.0m ³ , 되메우기 130.0m ³ , 순성토 운반 12.0m ³ - 배수공 : 흙관설치(D300) L=18m, 집수정 설치 2개소 - 구조물공 : C암거(2.0×1.5)설치 L=17.0m, 면벽설치 H=0.8~1.5m, L=5.0m, 옹벽설치 H=2.5~3.0m, L=10.0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127m ²	허가	'23.11.20.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상수도 가압장 증설>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산82-1, 82-2번지 일원(문화재구역구역으로부터 8m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가압장 증설(6.0×2.5×2.5), 유량계실, 유입·유출관로(D=300, L=18.0m×2) - 토공 : 터파기(토사) 54.147m ³ , 되메우 기 41.402m ³ ,모래부설11.977, 보조기층 2.755m ³ - 배수공 : 유입관로(DCIP) D300, L=18m, 유출관로(DCIP)300, L=18m - 포장공 : A.S.P 파취 및 복구 = 16.455m ² - 전기관벨 : 1.2×0.87×2.25m(기초 = con'c 0.72m ³) - 유량계실 : 2.5×1.6×1.8m	허가	'23.11.2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효소왕릉	경북 경주시	○○○	<p><태양광발전설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731-3(건물위)(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2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용량 : 88kW - 설치면적 : 415.36㎡ - 무게 : 16.16t(모듈의 총 무게 : 3.840kg /구조물 무게 : 12.320kg) - 건물 높이 : 7.365m - 설치 후 높이 : 9.053m 	허가	'23.11.30.
사적 경주 헌덕왕릉	경북 경주시	○○○	<p><가설건축물(농막)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108-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9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규모 : 18㎡(3m×6m) - 설치높이 : 3.5m - 경량철골조 - 상수도 연결·대지면적 : 803㎡ ○ 허가조건 : 3년(존치기간) 후 재심의 	조건부 허가	'23.12.06.
사적 부여 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	<p><탐방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4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내용 : 퇴적토 및 노후 콘크리트 제거 및 포장 - 노면 포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L=610m / B=10.~1.2 / 면적 698㎡ · 터파기: T=0.1m · 포장공법: 황토포장(T=0.1m) 	허가	'23.11.17.
사적 부여 능산리 사지	충남 부여군	○○○	<p><2023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 기념 고유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93(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3.12.12(화) 10:00~12:00 - 시설물설치 : 교자상(150cm×90cm×40cm) 1개, 향탁(45cm×30cm×20cm) 1개, 돛자리(180cm×90cm) 2개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23.11.2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	<p><임목벌채 및 조림(밤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76-3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수종 : 굴참나무 등(3,465본) - 조림수종 : 밤나무(1,680본) - 면적 : 4,200㎡ ○ 허가조건 : 산사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조건부 허가	'23.11.14.
사적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충남 공주시	○○○	<p><CCTV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145-3번 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개수 : 3대 - 설치장소 : 매표소 시설물 2대, 왕릉원 내 컴퓨터 1대 	허가	'23.12.06.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기양마을 태양광 경관조명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기양리 251-8번지 등 15필지(문화재구역과 연접/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등 : 300개(1.5kW, 1개당 5W), H=0.55m - 담장등 : 250개(1.125kW, 1개당 4.5W), 설치높이 1~1.5m 	허가	'23.11.14.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숲가꾸기(간벌)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산 68-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79,533㎡ - 작업내용 : 간벌(사업면적의 15~20%) - 수종 : 리기다소나무, 상수리나무, 기타활엽수 	허가	'23.11.17.
사적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충북 진천군	○○○	<p><가설건축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95-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199㎡ - 규격 : 6×4m(24㎡), H 2.6m / 컨테이 너(농막) 2동 ○ 허가조건 : 3년 존치 가능하며 연장 설치 시 재허가 필요함 	조건부 허가	'23.11.2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청주 신봉동 고분군	충북 청주시	○○○	<p><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 61-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1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2동 - 부지면적 : 4,641㎡ - 건축면적 : 694.80㎡(1동 463.20㎡ / 2동 231.60㎡) - 건축규모 : 지상1층(2동) - 최고높이 : 1동 7.1m, 2동 7.1m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경사지붕) - 토목공사 : 토공[흙깎기(H=-20cm, 6,136㎡)], 상수공[광역상수도 이용], 우수공[우수관(D300, L=235.0m), 우수맨홀(600×600×1000, A=9.0개소)], 오수공[일체형오수받이 1개소, 우수관(D150, PVC, L=54.0m)], 포장공[아스콘포장(T=15cm, A=2,606.0㎡)], 부대공[잔디식재(H=5m, 평떼, 458㎡)] 	허가	'23.12.05.																				
사적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	<p><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050-1, 527, 검복리 25-1(문화재구역에서 200~300m 이격 / 1,2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위치</th> <th>충전기 보호 시설(캐노피)</th> <th>설치 대수</th> <th>점용면적</th> </tr> </thead> <tbody> <tr> <td>산성리 1050-1</td> <td>W1955×H2570×D1180</td> <td>6</td> <td>33.58㎡</td> </tr> <tr> <td>산성리 527</td> <td>W1955×H2570×D1180</td> <td>4</td> <td>6.22㎡</td> </tr> <tr> <td>검복리 25-1</td> <td>W260×H376×D171</td> <td>1</td> <td>0.37㎡</td> </tr> <tr> <td>합계</td> <td></td> <td>11</td> <td>40.17㎡</td> </tr> </tbody> </table>	위치	충전기 보호 시설(캐노피)	설치 대수	점용면적	산성리 1050-1	W1955×H2570×D1180	6	33.58㎡	산성리 527	W1955×H2570×D1180	4	6.22㎡	검복리 25-1	W260×H376×D171	1	0.37㎡	합계		11	40.17㎡	허가	'23.11.15.
위치	충전기 보호 시설(캐노피)	설치 대수	점용면적																						
산성리 1050-1	W1955×H2570×D1180	6	33.58㎡																						
산성리 527	W1955×H2570×D1180	4	6.22㎡																						
검복리 25-1	W260×H376×D171	1	0.37㎡																						
합계		11	40.17㎡																						
사적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	<p><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61-64(문화재구역에서 421m 이격/7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면적 : 140.23㎡ - 발전용량 : 18.6kW - 구조물 최고높이 : H=7.342m(기존건물 최고높이 12.8m + 변경 최고높이 4.4m) 	허가	'23.11.2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	<p><전신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6-59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면적 : 0.288㎡(0.096㎡×3본) - 설치높이 : 12m 	허가	'23.12.06.
사적 파주 윤관장군묘	경기도 파주시	○○○	<p><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천지1·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69-25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9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면적 : 699.4㎡(250.7㎡+448.7㎡) - 발전용량 : 152.32kW - 구조물 최고높이 : H=3.308m 	허가	'23.11.03.
사적 파주 이이 유적	경기도 파주시	○○○	<p><보호구역 내 미사용 건축물 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6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1동, 가압펌프실 1식, 등나무 1식 철거 - 폐걸러 1식 설치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23.11.10.
사적 포천 반월성	경기도 포천시	○○○	<p><숲가꾸기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06-1번지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숲가꾸기(숙아베기 및 임재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28ha - 내용 : 신갈 및 리기다소나무 631본 간벌 ○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건부 허가	'23.11.07.
사적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도 연천군	○○○	<p><전국 노래자랑 개최를 위한 가설 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가설시설물(무대) 설치(240㎡)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설치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 등 	조건부 허가	'23.11.0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65번지 41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4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354㎡ - 건축면적/연면적 : 182.85㎡/182.85㎡ - 층수/높이 : 지상 1층 / 4.2m(평지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콘크리트 용벽(H 0.5~4.9m/L 59m) 및 축조블럭(H 1.1~4.9m / L 55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23.11.16.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변천 17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면적 : 153.72㎡ - 태양광 최대높이 : 7.72m(기존건축물 높이 : 6.23m) - 설비용량 : 34kW 	허가	'23.11.22.
사적 화성 마하리 고분군	경기도 화성시	○○○	<p><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3동)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8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부지) 사업면적 1,019㎡(부지면적 998㎡, 도로면적 21㎡), 식생블럭(H 0~3m, L 49.2m),보강토블럭(H 0~3m, L 111.7m) - (2부지) 사업면적 1,058㎡(부지면적 998㎡, 도로면적 60㎡), 식생블럭(H 0~3m, L 102.5m),보강토블럭(H 0~3m, L 71.8m) - (3부지) 사업면적 1,031㎡(부지면적 998㎡, 도로면적 33㎡), 식생블럭(H 0~3m, L 53.3m),보강토블럭(H 0~3m, L 79.8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23.11.2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화성 당성	경기도 화성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칠곡리 산55번지 7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486㎡(부지면적 170㎡, 도로면적 316㎡) - 건축면적/연면적 : 17.84㎡ / 17.84㎡ - 층수/높이 : 지상 1층 / 4.0m - 구조 : 경량목구조 - 콘크리트 용벽(H 0~3m / L 128m) - 콘크리트 포장(T 200mm 이하 429㎡) 	허가	'23.11.21.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경기도 구리시	○○○	<p><아차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68번지 8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8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 2-2호선) 길이 41m, 폭 8m - (소로 3-2호선) 길이 94m, 폭 6m · 토공사 : 절토 710㎡, 성토 123㎡ · 포장공사 : 아스팔트포장 1,157㎡, 잔디블럭포장 20㎡, 미끄럼방지포장 184㎡ · 우수공사 : 우수관(D450~1200) 32m · 구조물 : L형 옹벽(H 2.0~3.0m) 24m, 자연석 쌓기(H 1.5m) 11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23.11.20.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경기도 오산시	○○○	<p><개간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328-22번지, 산12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간목적 : 개간 후 농작물(채소류, 곡물 등) 재배 - 개간면적 : 3,101㎡ - 절토량/성토량 : 1,712㎡ / 1,054㎡ - 수목벌채 : 소나무, 밤나무, 활잡목 등 123본(31.14㎡) - 법면처리 : 씨드스프레이 및 코아네트 설치(1,134㎡)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23.11.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	<보호구역 내 그늘막 설치>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8 (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그늘막 설치(가로 3 × 세 로 2.2 × 높이 2.5)	허가	'23.11.27.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함안군	○○○	<국도 확장>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1 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2, 5구역) ○ 사업내용 : 군북~가야 국도건설 공사 (총연장 6.96km, 도로 확장 8m→11.5m)	허가	'23.12.05.
사적 함안 가야리 유적	경남 함안군	○○○	<작물재배사 건립>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392-1 등 5필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 부터 220m 이격/5구역) ○ 사업내용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작 물재배사) 건립 - 사업면적 : 6,235㎡ - 건축면적(규모) : 517.5㎡(1층) ※ 높이 3m 이상의 절토 및 석축 ○ 허가조건 : 굴착 작업 시 참관조사 시행	조건부 허가	'23.12.11.
사적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도 제주시	○○○	<오수관 매설 및 진입로 조성>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584-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6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오수관 매설(폭 1m, 연장 6m, 깊이 1.3m), 진입로 조성(폭 6.6m, 연장 5m, 아스콘포장 및 옹벽 설치)	허가	'23.11.02.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	광주시 광산구	○○○	<자원순환시설 철거 후 증축(선별장)> ○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086-10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5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철거) 1동, 면적 74.4㎡, 높이 약 8.5m - (증축) 1동, 면적 63.7㎡, 높이 8.46m	허가	'23.11.20.
사적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	<상수관로 매설>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산 94-9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연장 902m, 굴착 폭 1.5m, 깊이 1.3m (관경 75, 50mm) ○ 허가조건 - 굴착 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건부 허가	'23.11.1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전주 남고산성	전북 전주시	○○○	<p><산불예방 숲가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153-4 외 3필지(문화재구역과 연결/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9.8ha(1구역), 숲 밀도조절 (1,000본/ha → 500~600본/ha) - 숲아베기, 중층가꾸기, 가지치기 등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벽 인근 작업 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후 시행 - 외래수종 우선 제거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굴착 작업 시 관계전문가 입회 - 사업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에 대하여 관람객 및 지역주민에게 안내할 것 	조건부 허가	'23.11.17.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p><하구관로 개량 및 빗물받이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0-32 외 2필지(문화재구역 내외) ○ 변경내용(추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관로 정비(2개소) - 빗물받이 설치(1개소) ○ 허가조건 : 굴착시 서울문화재연구원 참관 	조건부 허가	'23.11.14.
사적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종로구	○○○	<p><보호구역 내 미사용 초소 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산1-1 (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철거 건축물 규모) 면적 3.91㎡, 높이 2.85m ○ 허가조건 : 지하구조물 철거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건부 허가	'23.12.13.
사적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	<p><보호구역 내외 연화산 사면 수해복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43, 산1번지(문화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비온 옹벽 설치(H=2.0M,L=8.0M) - 배수시설 설치(벤치플롭관 400×400, L=32.0M / 이중벽관 D500, L=12.0M / 집수정 1,000×1,000, 1개소) ○ 허가조건 : 굴착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건부 허가	'23.11.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	<p><보호구역 내 진입로 들계단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8, 513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서원 돌다리 진입로 계단 정비 ○ 허가조건 : 제출한 설계도서대로 시행 하되 굴착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건부 허가	'23.12.01.
사적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경북 경산시	○○○	<p><경산대입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사무소 추가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산시 임당동 423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0m 이격 /1구역) ○ 변경내용(추가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10,152㎡ - 건축(연)면적 : 1,926.8㎡ - 건축규모 : 지상 1층 12동/최고높이 4.2m - 부대시설 : 매쉬펜스(경간 2m, 208개), 도로경계블럭(경간1m,336개),아스콘포장(4,917.3㎡),플룸관(300×300mm, 325m), 보도블럭(732㎡) ○ 허가조건 : 존치기간 연장시 재허가 필요 	조건부 허가	'23.11.21.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부지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88-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30m 이격/2구역) ○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660㎡ → 634㎡ - 보강토옹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석 쌓기(H=0~3.5m, L=56m) → 자연석 쌓기(H=0~3.0m, L=79m) ▲ 석축(H=0~3.5m, L=57m) → 석축(H=0~4.0m, L=46m) - 최대절토/성토고 : 3.5m/3.5m → 3.5m/4.0m 	허가	'23.11.24.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19-4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844㎡ - 건축면적/ 연면적 : 331.19㎡/ 492.3㎡ - 건축규모/ 최고높이 : 1동 2층/ 7.9m (평지붕)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허가조건 : 시굴조사 등 매장문화재 조사를 할 것 	조건부 허가	'23.10.0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07번지 등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6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803㎡→ 799㎡(사업부지 660.0㎡, 도로 139.0㎡) - 건축면적/ 연면적 : 117.64㎡/ 149.77㎡→ 117.90㎡/ 97.65㎡ - 건축규모/ 최고높이 : 지상 2층(1동) → 지상 1층(1동)/ 7.5m→ 6.45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목구조 - 보강토 옹벽 설치 : 41m(H=0.2~2.9m) → 93m(H=0.2~4.2m) - 콘크리트포장(T=20cm) : A=315㎡, 웬스 설치(L=82m), 수목식재(41주)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조건부 허가	'23.11.07.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보호구역 내 전등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4번지 등 4필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7,936㎡ - 건축면적/ 연면적 : 201.78㎡(가동 107.73㎡, 나동 94.05㎡)/ 869.95㎡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2동(지하연결)/최고높이 13.68m(지하층 포함)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 한식목구조(지상) -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절토(H=7.5m) 7,500㎡, 성토(H=3.1m) 1,125㎡, 사토 7,553㎡ · 구조물공 : 자연석쌓기(6목 H=0.2~2.8m, L=84m), 한식 담장(H=1.2m, L=165.4m)-담장기와 포함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A=175㎡ · 조경공 : 철쭉(150주), 측백(150주), 눈주목(100주) · 부대공 : RPP가설 방음벽(H=4.0m, L=211m), 이동식세륜시설 1개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각 1개소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관조사 등 매장문화재 조사 후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23.12.0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관문성	울산시 북구	○○○	<p><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울산시 북구 중산동 339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13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036㎡ - 규모 : 18㎡(3m×6m), H=3m/ 1개소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존치 가능하며 연장 설치 시 재허가 필요함. - 컨테이너 색상은 회색 계열로 할 것 	조건부 허가	'23.11.09.
사적 관문성	울산시 울주군	○○○	<p><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308-5, 308-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802㎡(사업부지 626㎡, 도로 176㎡) - 건축면적/연면적 : 119.71㎡/119.71㎡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1동)/최고높이 5.3m - 건축구조 : 목구조 -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흙쌓기(H=2.65m) 252㎡, 흙깎기(H=1.61m) 282㎡, 터파기 77㎡, 되메우기 30㎡ · 구조물공 : 석축찰쌓기(H=0.0~2.5m) L=108.7m, 돌계단(B=2m) · 상수공 : 관정 2개소, 상수관(φ25m/m) L=41.0m · 우수공 : 우수관(Ø250m/m) L=100.0m, 우수관(Ø350m/m) L=8.0m, 플럼관(D200) L=46.0m, 집수정(0.5×0.5×0.8m) 6개소, 집수정(0.8×0.8×1.0m) 1개소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이하) A=229㎡ 	허가	'23.11.23.